



서대문구의회

연구용역

서대문구 자치법규 및 조직개선에 대한 입법과제 도출 연구

최종보고서

2023.12

제 출 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귀하

「서대문구 자치법규 및 조직개선에 대한 입법과제 도출 연구용역」 보고서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의회개혁발전연구회’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3. 12.

발주처	서대문구의회 의회개혁발전연구회	
대표	서호성	
간사	박진우	
의원	강민하, 김양희, 박경희, 이용준, 이진삼, 홍정희	
연구기관	(사)지방자치발전소	
책임연구원	손종필	
연구원	정인영	
	김미영	

※ 이 연구용역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이며, 서대문구의회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요약문

1. 서대문구의회 관련 자치법규 정비 방안

1) 의회 관련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내용

(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의의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이론적 의의는 주민주권 구현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국정 동반자로서의 지위를 얻었다는 것임
- 정책적으로는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도입으로 의회의 전문성과 책임을 강화하는 등 지방자치 제도 발전 및 자치입법권 강화에 의의가 있음

(2)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개요

- 개정된 지방자치법 중 지방의회와 관련된 변화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주민 중심 지방자치 구현,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 및 투명성 강화, 지방의회의 책임성 강화, 지방의회 윤리 심사 징계에 대한 심사 및 자문 기능 강화를 꼽을 수 있음
- 지방의회 자치법규와 관련된 내용은 크게 지방의회 역량 강화 및 자치권 확대, 의회 책임성 및 투명성 제고로 구분할 수 있음
 - 역량 강화와 자치권 확대

분야	개정 전	개정 후
자치입법권 보장 강화 (제28조)	-조례의 제정 범위 침해 관련 미규정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위임내용·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하지 못하도록 규정

분야	개정 전	개정 후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제103조)	-의회 사무처 소속 사무직원 임용권은 단체장 권한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임용권의 일 부를 지방의회의 사무처장 등에 위임 가능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 임용 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제41조)	-규정 없음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도만 의원 정수 1/2 범위에서 정책연구위원 운 영(21명)	-모든 지방의회에서 의원정수 1/2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 력 운영 가능 ※단, 2023년까지 단계적 도입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 (제5장)	-회의 운영 방식 등 지방의회 관련 사항이 법률에 상세 규정	-조례에 위임하여 지역 특성에 맞게 정하도록 자율화

－ 책임성 및 투명성 제고

분야	개정 전	개정 후
정보공개 확대 (제26조)	-자치단체 정보공개 의무·방법 등 미규정	-의회 의정활동, 집행부 조직·재 무 등 정보공개 의무·방법 등에 관한 일반규정 신설 -정보 플랫폼 마련으로 접근성 제고
의정활동 투명성 강화(제74조)	-지방의회 표결방법의 원칙 관련 근거 미비	-기록표결제도 원칙 도입
지방의원 겸직금지 명확화 (제43조)	-겸직금지 대상 개념 불명확 -겸직신고 내역 외부 미공개	-겸직금지 대상 구체화 -겸직신고 내역 공개 의무화
지방의회 책임성 확보(제65조)	-윤리특위 설치 임의규정 -윤리심사자문위 설치 미규정	-윤리특위 설치 의무화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 자문위 설치, 의견 청취 의무화

2)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회 권한 및 자치권 변화

(1) 자치입법권 강화

-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제28조(조례)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내용과 범위를 제한·규정할 수 없음을 명시하는 등 자치입법권이 강화됨

(2)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전에는 시·도 의회 사무처 소속 직원 임용권이 시·도지사에게 있었지만 개정 후 시·도 및 시·군·구의회의 사무처 소속 직원 임용권이 의회 의장에게 부여됨
- 「지방공무원법」에서도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지방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용권을 부여하고 지방의회에 인사위원회 설치, 집행기관 또는 지방의회 간 인사 교류가 가능하게 하는 등 지방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 체계가 개편됨

(3)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 의회와 의원의 역량 및 전문성 향상이 요구되면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이 도입됨
-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게 됨
- 정책지원관의 직급은 전문위원과의 관계나 집행부 직원과의 직급 형평성 등을 고려해 시·군·구의 경우 7급 이하로 채용하고 전문성 확보를 위해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만 임명할 수 있도록 함

-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 등과 관련하여 정책지원관 명칭, 직무 범위, 임용 절차 등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하며, 이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제47조부터 52조까지와 제83조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음

(4)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 및 투명성 강화

- 정례회, 임시회 등 의회 소집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등 지방의회 운영에 있어 자율성이 확대됨
- 의회의 의정활동을 종합적으로 공개하는 등 정보공개 범위가 확대되었고 주민에 대한 책임성 역시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선됨

(5) 지방의회 책임성 강화

-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지방의원 겸직 금지, 겸직 신고 내역 공개 의무화, 의원의 의무를 강화하는 조항을 법령에 규정하여 의회의 책임성이 강화됨

(6) 지방의회 윤리 심사 징계에 대한 심사 및 자문기능 강화

- 지방의회의 윤리특별위원회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의 감시를 강화하는 등 지방의회 윤리심사 징계에 대한 심사와 자문기능이 강화됨

3) 지방자치법 개정 및 서대문구의회 자치법규 정비 현황

(1) 서대문구의회 관련 자치법규(2023.9.20. 기준)

- 2023년 9월 현재 서대문구의 의회 관련 자치법규는 모두 51개로 23개의 조례와 28개의 규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2)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서대문구의회 자치법규 정비 현황

- 의정활동비 등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의 제2조, 제3조, 제6조 등에 해당 내용 규정
- 의원의 겸직 신고 등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제7조(겸직 신고)에서 연 1회 이상 의원에게 겸직 신고에 대한 내용을 안내하고 겸직 신고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정기적으로 현행화하여 공개하도록 규정
- 정례회, 임시회, 개회·휴회·폐회와 회의 일수 관련하여 기존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내용 반영
- 의원 의안 발의와 관련하여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의원 발의 요건을 의회 자율로 조례에 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서대문구의회는 이를 아직 조례로 반영하지 않았음
- 의회 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사무국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6조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
- 정책지원 전문인력 배치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사무국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5조에 정책지원관 관련 조항을 두

고 있음

- 윤리특별위원회 설치와 관련하여 서대문구의회는 법 개정 이전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에 이미 반영하고 있었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관련 조항은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제7조 제4항에 겸직 신고와 관련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음 (2023.2.22. 개정)
-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장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을 통해 비용추계 자료 등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내용을 규정
- 결산검사위원 확대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를 통해 기존 5인에서 9인으로 확대

4) 서대문구의회 운영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 개정 방향

- 현재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서대문구의회 관련 자치법규는 대부분이 정비가 된 것으로 보이나 정책지원관 운영이나 의원발의 요건, 의정활동 정보공개 등에 대해서는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정책지원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사무국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사무국 사무분장 규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정책지원관 임용, 교육,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 등을 규정하는 조례는 부재하여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지방자치법」은 의원 의안 발의 요건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서대문구의회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제 18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입법되어 있는 만큼 해당 조례에 의원 발의 요건을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 의정활동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서대문구의회가 주민의 알권리와 의정활동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별도 조례 입법을 검토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검직 신고 공개와 관련하여 현행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제7조(검직 신고)에 ‘의장은 연 1회 이상 의원에게 검직 신고에 대한 내용을 안내하고 신고 내용을 점검한다’ 및 ‘의장은 검직신고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현행화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기적’이라는 모호한 표현보다는 “매해 00월 00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등의 구체적인 시기 및 날짜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명시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함

5) 서대문구의회 기본조례 입법 제안

(1) 의회 기본조례 제정의 필요성

-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의회 회의 운영 자율화, 의회 인사권 독립 등 조례 제·개정 사항이 많아짐에 따라 기존 의회 관련 조례들을 통합하여 기본조례 제정을 검토할 수 있음
- 최근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들이 개별 조례 및 규칙으로 산재되어 있는 의회 운영 관련 조례를 통합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본조례를 제정하는 추세로, 2023년 10월 현재 전국 48개의 지방의회에서 「의회 기본조례」를 제정함
 - 광역: 서울, 경기, 강원, 광주, 대전, 울산, 전남, 전북, 충남, 충북(10개)
 - 기초: 서울 11곳, 경기 5곳, 대구 2곳, 대전 5곳, 전남 4곳, 경북 2곳, 충남 2곳, 충북 3곳, 인천, 전북, 광주, 부산 등 각각 한 개의 지역이 제정(38개)

(2) 서울특별시 자치구의의회 기본조례 제정 현황 비교

- 서울특별시 자치구의의회 중 기본조례를 제정한 곳은 11개 의회
- 서울특별시 자치구의의회 중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 조례를 제정한 곳은 광진구의의회, 노원구의의회, 도봉구의의회, 성북구의의회, 용산구의의회, 은평구의의회, 종로구의의회, 중랑구의의회 등 8개 의회임
 - 도봉구의의회, 용산구의의회, 은평구의의회, 중랑구의의회는 총칙, 정례회 등 회기 운영(회의 운영), 의회의 기관, 의원, 위원회와 위원,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답변, 질서와 경호로 구성
 - 강동구의의회와 영등포구의의회는 총칙, 의원, 의회의 기관, 회기 운영, 위원회와 위원,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 답변 등, 질서와 경호 등으로 구성

-성북구의회와 서초구의회, 광진구 의회는 의원 연구 활동 근거를 포함

2. 의회 독립성 확보를 위한 개선 방안

1) 의회 인사권 독립 관련 법령 검토

(1) 관련 법령 주요 내용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과거 자치단체장의 권한이었던 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되면서 지방의회가 독립적인 인사 운영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됨
-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 인력 운영 자율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변환점이라고 볼 수 있음
- 시·도의회가 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처 설치, 직원 기준, 직무 및 신분에 대해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사무처 등의 설치(제102조), 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제103조), 사무직원의 직무와 신분보장(제104조)
-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2021.10.6.)되었으며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지방의회 의장에게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부여
 - 지방의회 의장 소속으로 자체 인사위원회 설치·운영 등 우수인력 확보, 시험관리 인력 등이 필요한 경우 집행기관에 시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행정안전부와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지방의회, 그리고 각 지자체 지방의회 간의 인사 교류 근거 마련

(2) 서대문구의회 인사 관련 자치법규

- 서대문구의회 인사 관련 자치법규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사무국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사무국 사무분장 규칙」이 있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은 인사위원회 설치(제4조), 임기제공무원 인사관리(제24조), 심사승진(제30조), 근무부서 배치(제34조), 인사협의(제40조)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사무국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제103조에 의거한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분장사무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2) 서대문구의회 사무기구 조직 및 인력 현황

(1) 지방의회 사무기구 기능 및 역할

-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의회 의정활동 지원기능은 입법 기능, 정책지원, 행정 및 재정 관리 지원, 그리고 의사진행 지원 등으로 구분됨

지방의회 의정활동 지원기능		주요 내용
입법 및 정책 지원	입법 및 정책 입안 지원	법안의 검토, 법제 지원, 정책연구 조사 및 개발 등
	재정 집행 심사 및 평가지원	예산분석, 결산 분석, 평가분석, 사무감사 등
	정보 및 자료제공 지원	자료 수집, 자료제공, 동향 조사, 현안 조사 및 분석 등
	의정활동 홍보 지원	보도자료 작성, 배포, 간행물 발간 등
	대외협력 및 교류 지원	의원의 외교, 교육 연수, 협정 체결 등
행정 및 재정 관리 지원		서무, 인사, 회계, 물품, 재산 등
의사진행 지원		회의 소집과 운영, 의사진행의 보좌 등

(2) 서대문구의회 사무국 조직 현황

- 2023년 11월 현재 서대문구의회 사무기구는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무국장 아래 1실, 4팀으로 이루어짐
- 서대문구의회 사무국 설치와 관련한 자치법규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사무국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사무국 사무분장 규칙」임
- 서대문구의회 의원은 총 15명으로, 가~마까지 5개의 선거구가 있으며 선거구별로 2~3명을 선출하여 현재 지역구 전체 13명의 의원과 비례대표 2명으로 구성됨
- 상임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재정건설위원회 3개로 운영위원회는 다른 상임위와 겸직이 가능하여 모든 상임위가 7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서대문구의회 사무국은 1실 4팀으로 구성

- 2023년 10월 현재 서대문구의회 사무기구는 사무국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사무국장 아래 1실, 4팀으로 이루어짐
- 전문위원실은 5인, 의정팀은 15인, 의사팀은 6인, 홍보팀은 7인, 정책지원팀은 8인으로 구성되어 있음
- 서대문구의회는 정책지원관제도가 신설되면서 사무국에 정책지원팀을 운영하고 있음

□ 서대문구의회 정책지원관 1인이 보좌하는 의원의 수 2.1명

- 서대문구의회는 경우 정책지원관 7인이 15인의 의원 의정활동을 보좌하여 정책지원관 1인이 보좌하는 의원의 수는 2.1명임
- 이는 서울특별시 전체 기초자치단체 내에서는 9번째로 강남구의회, 노원구의회, 은평구의회, 중랑구의회, 영등포구의회, 동작구의회와 동일함

(3) 인사 운영 현황

□ 부분적 인사권 독립

-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이후 의장은 의회 사무직원을 감독하고 관련 법령 및 조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직원의 임명, 교육, 훈련, 복무,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음
-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등 규정에 따라 의장을 임용권자로 한 인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시책 수립 및 시행, 교육훈련 계획 등을 수립할 수 있음
-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치단체 정원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 집행기관장의 고려에 따라 변동 여지가 있는 것과 달리 의장의 권한은 사무처장 및 하부조직만을 규정하고 있어 보좌기구 등에 대한 명

확한 권한이 없는 실정임

□ 서대문구의회 정책지원관 채용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에 의거 정책지원관을 임기제 7급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있고, 대부분의 의회가 업무 성과에 따라 5년 범위 이내에서 채용 기간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음
- 서대문구의 경우 정책지원관 최초 채용 시 근무기간을 1~2년 이내로 하고 있는데 업무 성과가 탁월한 경우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하며 이후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추가로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음

(4) 한계

- 사무기구의 자체 조직권 및 예산권 등의 권한이 여전히 단체장에게 부여되어 있어 단체장 협조 없이 의회가 자체적으로 조직을 개편하거나 확대하는 등 자율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실정임
- 정책지원관에 대한 지방의회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 부재로 효율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등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해서 상당 부분 해결 가능한 부분임
- 다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이 단기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정책지원관이 정책지원관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의원 보좌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명확한 업무분장이 우선되어야 할 것임
- 정책지원관 관련 규정에서 업무분장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불필요한 부분은 과감하게 삭제할 필요가 있음

4) 서대문구의회 사무기구 운영 방향

(1) 법령 개선 과제

- 장기적으로 지방의회 의장의 사무기구 관리 권한 확대, 지방의회 예산편성권 독립 등 상위법령 개선이 필요함

(2) 업무 관련

- 서대문구의회는 의회의 법률적 권한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의원에 대한 전문적인 의정보좌 체계 마련, 집행부 견제 등의 임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의정보좌 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지원관의 의정보좌역량을 강화하는 등 보다 안정적으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관 운영에 관련 세부적인 내용 규정이 필요함
-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정책지원관의 구체적인 사무를 조례에 명시할 수 있기 때문에 서대문구의회는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하여 전문위원과 정책지원관의 업무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중복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할 수 있을 것임
- 「정책지원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정책지원관 교육·훈련에 대한 조항을 규정한 의회는 모두 12곳이 있음
- 광주 북구는 「광주광역시 북구 정책지원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정책지원관의 담당 상임위원회를 의회 사무국장이 지정하고 그 과정에서 정책지원관의 실무경력 및 전공 분야 등을 고려하여 배정하도록 하는데 이를 참고할 수 있음

(3) 인사 운영 관련

- 사무기구 정원 및 조직구성, 예산편성권 등의 권한이 의회에 없어서 의회가 집행부와 완전히 독립된 방식으로 인사권을 집행하기 어렵고 정책지원관을 지휘·담당하는 의원이 인사위원회에 위촉될 수 없는 실정임
- 이에 지방의회 의장은 중장기적인 인력운영 계획을 수립·진행해야 하며 지방의회 특성상 별정직/임기제 공무원 정원이 한정되어 있어 의회 사무국 직원 채용에 대한 우선순위를 사전에 계획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정책지원관 업무평가에 지휘·담당 의원의 의견을 반영하고 교육훈련 이수 실적 등을 평가에 반영하는 등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서대문구의회 맞춤형 대응 전략

1) 서대문구의회 정책지원 역량 강화 관련 조사·분석

□ 개요

- 서대문구의회 의원, 정책지원관을 대상으로 정책지원 역량 강화 관련 설문 및 인터뷰를 진행함
- 전체 의원 15명 중 10명이, 정책지원관은 7명 중 6명이 설문 및 인터뷰에 참여하였음

□ 조사 결과

- 정책지원관 보좌 및 의정활동 지원에 대한 의원의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5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긍정적인 만족도가 90%를 차지함
- 정책지원관 수의 적정성에 대해 의원의 60%가 부동의 한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동의하는 20% 대비 3배가 높은 비율임
- 설문 및 인터뷰 결과 특정 의원과 정책지원관이 개별 매치 되는 현재의 방식에서는 담당 의원에 따라 정책지원관의 업무 범주가 상이하고 업무 분장의 강도에도 차이가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정책지원관이 두 명의 의원을 효율적으로 보좌할 수 있도록 업무 매뉴얼 등 사무처리 규정·체계가 필요함
- 설문 결과 정책지원관 적정 사무에 대한 의원과 정책지원관의 의견에 상당 부분 차이점이 발견되어 향후 정책지원관의 적정업무를 구체화하여 자치법규에 규정하는 등 의원과 정책지원관 간 합의가 필요할 것임
- 서대문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정책지원관은 전체 응답자 중 33.3%로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2배 더 높게 나타났지만, 의원의 경우 응답자의 60%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조례 제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확인

2) 단기 개선 과제(지방의회 차원)

(1) 의회 운영 관련 자치법규 정비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안 발의 요건 규정
 - 「지방자치법」은 의결할 의안을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지방의회의원 찬성으로 발의하도록 규정(제76조)하고 있지만, 현재 서대문구의회는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있지 않아 「서대문구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원 발의 요건을 추가로 규정할 것을 제안함
- 의정활동 정보 공개 등 관련 자치법규 입법
 - 서대문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 투명성 제고와 관련하여 의정활동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하는 등 관련 자치법규 마련이 필요함
 - 기초의회에서는 아직 별도의 입법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서대문구의회가 선도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정활동 공개 조례」를 입법하여 의정활동을 공개하는 등 주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을 제안함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기본조례」 입법
 -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이후 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대를 반영하는 조례의 재개정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관련 조례들을 통합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음
 - 서대문구의회 기본조례는 총칙, 회기 운영, 의회의 기관, 의원, 위원회와 위원,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답변 등, 질서 및 방청 등, 의정활동 상황 공개, 의원 연구 활동 등으로 구성될 수 있음
 - 서대문구의회가 기본조례를 제정하게 된다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등은 폐지되어야 할 것임

(2) 정책지원관 운영 개선

-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개별 의원의 개인 정책보좌관 도입이 요구되지만 아직까지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정책지원관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현실이기에 차선택으로써 서대문구의회 특성을 반영한 정책지원관 배치 및 업무 우선순위 부여 등의 개선이 요구됨
- 또한 서대문구의회 정책지원관을 의원별로 배치할 경우 동일한 상임위, 정당 등 매칭 조건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의원들 간 사전 합의가 요구됨
- 서대문구의회 정책지원관 사무분장의 경우 현재 내용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지만, 기존에 정책지원관이 수행했거나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살펴본 결과 각 의원별, 정책지원관별로 정책지원관의 적정 사무를 판단함에 상당 부분 차이가 발견되어 세부적인 합의 필요성이 도출됨
- 정책지원관이 수행가능한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공론화하여 정책지원관의 업무가 아님에도 의원 혹은 정책지원관 개개인의 판단에 따라 업무를 의뢰하거나 수행하는 일이 없도록 적정업무에 대한 범위를 규정해야 함
- 서대문구의회 정책지원관의 업무 범위 관련 데이터 축적,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대한 평가 시 객관적인 근거 자료로 삼을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책지원관 사무처리 규정」 제정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지원관 업무 평가 시 담당 의원 및 의장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만들 것을 제안함
- 홍보의 영역은 정책지원관의 고유 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원의 의정활동 홍보에 대한 개인 소셜네트워크 홍보를 정책지원관이 해야 한다는 의원 의견이 상당하여 홍보 범위 및 주체에 대해 공식적이고 명확한 업무 분담이 요구됨
- 의회 홈페이지 및 의원별 공식 홈페이지는 사무국 홍보팀 차원에서 관

리하고 기타 개인 소셜 네트워크 홍보 등은 의원 각자가 담당하되, 의회 전체적인 의정활동 홍보 등에서 홍보팀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홍보 관련 조례 입법을 통한 홍보 강화 방안 혹은 현행 사무분장 규칙에 홍보에 관한 업무분장을 추가로 포함하여 의원 활동 보좌 관련 홍보 업무에 대한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마지막으로 정책지원팀 내 서무 등 행정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기존의 사무국 행정 부서에 해당 업무를 분담하여 정책지원관이 의정활동 보좌라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할 것을 제안함

(3) 정책지원관 운영에 관한 조례 입법

-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것을 제안함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에 관한 조례」 구성
 - 조례의 목적, 용어 정의
 - 정책지원관 임용 및 배치에 관한 사항
 - 정책지원관의 직무 및 지휘·감독 권한에 관한 사항
 - 정책지원관의 비밀 유지 엄수에 관한 사항
 - 정책지원관의 근무 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 정책지원관의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 교육훈련 실시 규정, 교육훈련 이수 실적, 근무 실적 평가 반영 등

3) 중장기 개선 과제(법령 개선 차원)

-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의회의 독립성 확보 및 전문성 강화 측면에서 여전히 한계점이 존재함
-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인사권 독립을 위해서는 독립된 기준인건비 신설, 직급 상향 및 인력 확대, 조직 체계를 갖추도록 해야 함
- 의원에 대한 충실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의원 1인당 1명의 정책지원관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함
- 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넘어선 지방의회 조직권 및 예산권 독립 등 의회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이 필요함
- 지방의회 조직·예산·운영 등을 규정하는 「지방의회법」을 입법하여 지방의회의 위상을 정립하고 독립성을 강화해야 할 것임
- 의회의 인사권 독립 역시 실제 의장의 권한은 의회 대표권, 의회 사무기관 관리·감독, 사무기구 소속 공무원 인사권 정도에 머무르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에게만 부여된 공무원 임명권 등 관련 규정을 지방의회 의장에게도 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함
- 지방의회 조직구성권, 예산편성권을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지방의회가 본연의 기능인 “집행부 견제 및 감시”를 수행하기에는 사실상 한계가 존재하므로 향후 집행 기구와 지방의회의 기준인건비 분리 등 예산편성권 독립에 의원들이 목소리를 더욱 높여야 할 것임

■ 목 차

I. 연구 개요	1
1. 연구의 배경 및 범위	1
1) 연구 배경	1
2) 연구 범위	2
3) 연구 기간	2
2. 연구 목표	2
3. 연구 내용	3
4. 연구 방법	4
5. 연구 수행 일정	4
II. 서대문구 의회 관련 자치법규 정비 방안	5
1. 의회 관련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내용	5
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의의	5
2)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개요	6
2.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회 권한 및 자치권 변화	8
1) 자치입법권 강화	8
2)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9
3)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10
4)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 및 투명성 강화	12
5) 지방의회 책임성 강화	12
6) 지방의회 윤리심사 징계에 대한 심사 및 자문기능 강화	12
3. 지방자치법 개정 및 서대문구의회 자치법규 정비 현황	14
1) 서대문구의회 관련 자치법규(2023.9.20. 기준)	14
2)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서대문구의회 자치법규 정비 현황	17
4. 서대문구의회 운영 관련 자치법규 개정 방향	22
5. 서대문구의회 기본조례 입법 제안	28
1) 의회 기본조례 제정의 필요성	28
2)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 기본조례 제정 현황 비교	29

Ⅲ. 의회 독립성 확보를 위한 개선 방안 32

1. 의회 인사권 독립 관련 법령 검토	32
1) 관련 법령 주요 내용	32
2) 서대문구의회 인사 관련 자치법규	36
2. 서대문구의회 사무기구 조직 및 인력 현황	39
1) 지방의회 사무기구 기능 및 역할	39
2) 서대문구의회 사무국 조직 현황	40
3.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 사무기구 운영 현황 비교	43
1) 사무기구 조직 현황	43
2) 부서별 업무 현황	50
3) 인사 운영 현황	55
4) 한계	59
4. 서대문구의회 사무기구 운영 방향	65
1) 법령 개선 과제	65
2) 업무 관련	67
3) 인사 운영 관련	70

Ⅳ. 서대문구의회 맞춤형 대응 전략 72

1. 서대문구의회 정책지원 역량 강화 관련 조사·분석	72
1) 조사 개요	72
2) 조사·분석 결과	72
3) 소결	94
2. 단기 개선 과제(서대문구의회 차원)	96
1) 의회 운영 관련 자치법규 정비	96
2) 정책지원관 운영 개선	103
3) 정책지원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115
3. 중장기 개선 과제(법령 개선 차원)	126
1)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126
2) 지방의회법 입법	127

표 차례

[표 1] 지방자치법 내 의회 역량 강화 및 자치권 확대 관련 내용	6
[표 2] 지방자치법 내 의회 책임성 및 투명성 제고 관련 내용	7
[표 3] 지방자치법 시행령 내 정책지원관 직무 관련 조항	11
[표 4] 정책지원관 채용 및 직급 관련 조항	11
[표 5] 지방의회 윤리심사 징계 및 심사·자문기능 강화 관련 조항	13
[표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자치법규 현황	14
[표 7] 서대문구의회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 반영 여부	19
[표 8]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정비가 필요한 서대문구의회 자치법규	22
[표 9]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 의원 발의 요건 조항 규정(예시)	24
[표 10]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방의회 관련 정보공개 항목	25
[표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25
[표 12] 제주특별자치도 상시 공개 의정활동 정보	26
[표 13]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 기본조례 제정 현황	29
[표 14]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 기본조례 비교	30
[표 15]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 기본조례에 의원 연구 활동이 포함된 경우	30
[표 16] 「지방자치법」 제12절 사무기구와 직원	33
[표 17] 「지방공무원법」 개정 주요 내용(2022.1.13.)	34
[표 18] 지방공무원 임용령 중 지방의회 인사권 관련 조항	35
[표 1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사무국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36
[표 20] 서대문구의회 사무국 사무분장 규칙	37
[표 21]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지원 주요 내용	39
[표 22] 의회 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및 직급 기준(제15조 제1항 관련)	40
[표 23] 서대문구의회 사무국 조직도 및 업무 분장	41
[표 24] 서울특별시 자치구 의회별 사무기구 현황(2023.11.15.기준)	43
[표 25] 서울특별시 자치구 의회별 정책지원관 사무국 배치 현황	45
[표 26] 서울특별시 자치구 의회별 정책지원관 1인당 담당 의원 수	54
[표 27] 지방공무원 임용령 중 일반임기제 공무원 관련 조항	56
[표 28] 서울시 자치구의회 정책지원관 응시 자격	58
[표 2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정책지원관 경력인정 범위	58
[표 30] 지방공무원법 내 인사위원회 설치 관련 조항	60
[표 31]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정책지원관 배치 및 평가 관련 조항	60
[표 32]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 정책지원관 주요 업무 내용(채용공고 기준)	62
[표 33]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책지원관 사무분장 내용	63

[표 34] 개방형 직위 및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임명권 관련 규정	65
[표 35]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정원관리에 대한 권한 관련 규정	66
[표 36] 지방의회의 예산편성권 관련 규정	66
[표 37]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책지원관 교육훈련 관련 규정	69
[표 38] 광주광역시의회의 정책지원관 배치 관련 규정	69
[표 3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96
[표 4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정활동 정보 조례」 주요 내용(안)	97
[표 41]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 의정활동 공개 관련 조항(예시)	99
[표 4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기본조례」 (안)	99
[표 43] 광주광역시 북구 정책지원관 사무처리 규정 내용(2022.10.26. 제정)	106
[표 44] 경기도 양주시의회 정책지원관 입법 및 정책지원 규칙 세부내용	107
[표 45] 원주시의회 정책지원관 입법 및 정책지원 규칙 세부내용	108
[표 46] 원주시의회 정책지원 의뢰 업무 처리 절차	110
[표 47] 정책지원관 정책지원 관련 주요 서식 내용	111
[표 48] 광역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관련 조례	116
[표 49]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 정책지원관 조례 내 직급 명시 조항	120
[표 50]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조례 내 직무 관련 조항	121
[표 51]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조례 내 교육훈련 관련 조항	122
[표 52]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 정책지원관의 임용 기간 및 지휘의원 지정 관련	123

■ 그림 차례

[그림 1] 정책지원팀이 별도로 개설된 의회의 조직도 예시(광진구의회)	46
[그림 2] 정책지원관이 전문의원실에 배치된 경우 조직도(은평구의회)	48

I. 연구 개요

1. 연구 배경 및 범위

1) 연구 배경

-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1952년 4월 최초 지방의원 선거 및 지방의회가 구성되면서 시작되었으나 1961년 5·16 군사 쿠데타에 의해 지방의회가 강제 해산되면서 중앙집권체제를 이어감
- 이후 1987년 6월 항쟁을 필두로 1988년 3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이 통과되고 1991년 3월 26일이 되어서야 시, 군, 구의원 선거를 실시하여 30년의 휴지기를 가졌던 지방자치가 다시금 부활함
- 지방자치법이 처음 제정된 것은 1949년이지만, 1961년 5·16 시절부터 1991년 3월까지 30년간 휴지기를 가졌던 것을 생각하면 사실상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역사는 그리 길지 않음
- 지난 2022년 1월 3일에 있었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얻어낸 결과라는 점에서 시사점이 크다고 할 수 있음
-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차원에서 볼 때, 미완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실질적인 내용을 구체화하는 점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으나, 거시적인 면에서 볼 때 주민자치의 원리 명시와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및 자율성 제고를 가능하게 하였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도입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역량과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여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음
- 가장 아쉬운 점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법이 집행기관 쪽으로 더 많이 치우친 한편, 의회의 독립성 확보 및 자치권 강화에 따른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도입되었음에도 그에 알맞은 조직개편 등의 후속 조

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활용도가 미흡한 상태임

- 정책지원관이 보다 효율적인 인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활용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과 연구가 필요함
- 또한 의원 역량을 더욱 강화시키고 자치법규와 조직을 개선하는 의회개혁과 발전을 위한 연구를 통해 올바른 지방자치를 위한 강화된 지방분권을 구축하는데 중요한 대응 전략을 구축할 수 있음 것임
- 이에 본 연구는 자치입법에 대한 의원의 이해와 입법 역량을 심화하고 조직구조에 대한 진단을 통한 변화를 모색하여 지방자치와 대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 정책 대안과 입법과제를 수행하고자 함

2) 연구 범위

- 공간적 범위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 내용적 범위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2022.1.13. 시행)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의회 및 타 시, 군, 구의회 자치법규

3) 연구 기간 : 2023년 7월~12월

2. 연구 목표

-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전반적인 변경 사항 및 지방의회 관련 개정 사항 심층 분석
- 서대문구의회 차원의 향후 지방자치 및 의정 환경 변화에 대응한 전략 수립

3. 연구 내용

○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른 조례 제·개정 방안 도출

- 개정 사항을 반영한 지방의회의 조례 제·개정의 필요성 검토 및 보완점 연구
- 서울특별시의회를 비롯한 타 시, 군, 구의 조례 분석을 통한 각종 사례(문제점 등) 조사를 통한 시사점 도출

○ 지방의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 방안 모색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강화에 따른 구체적 대응전략 연구
- 의회 권한 확대에 따른 의회의 내·외부적 환경 변화 방향성 모색
- 지방분권에 따른 의회 사무기구의 개편 및 의회 인사·조직 운영 관련 올바른 방향성 제시
-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역량강화 방안 및 효율적인 운영 방법 모색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후 현재까지 나타난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점 검토, 보완을 위한 개선 방안

○ 서대문구의회 심층적 평가 및 분석을 통한 맞춤형 대응 전략 수립

- 서대문구의회의 의정 환경 분석
- 현재 서대문구의 특성 및 정책개발의 한계점
- 현재까지의 의정 환경 변화에 따른 향후 전개 방향 제시
-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 이후, 더욱 강화된 서대문구의회의 자치분권을 위한 전략 방안 연구

4. 연구 방법

☐ 문헌 연구 및 데이터 분석

- 기존 연구 및 관련 자료 조사,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한 현황 및 실태 분석

☐ 사례 연구

- 사무기구 조직 및 인력 현황, 정책지원 전문인력 등 타 자치단체 및 해외 사례 연구 등

☐ 의원 및 의회 사무국 대상 설문

- 의원 및 사무국 정책지원관을 대상으로 설문, 인터뷰 진행

5. 연구 수행 일정

구 분	과업기간(6개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연구계획 수립, 착수보고회						
개정된 지방자치법 및 지방의회 관련 개정 사항 분석						
주민 참여 조례 등 주민 주권 구현 및 지방의회 독립성 확보를 위한 방안 모색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른 조례 제·개정 방안 모색						
서대문구의회 의 심층적 평가 및 분석, 맞춤형 대응전략 수립						
최종보고 및 보고서 작성						
공정율(%)	20				40	40
보 고 시 기	착수 보고				중간 보고	최종 보고

Ⅱ. 서대문구의회 관련 자치법규 정비 방안

1. 의회 관련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내용

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의의

(1) 이론적 의의

□ 주민주권 구현을 위한 제도적 토대 마련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주민참여 확대 등 주민주권 구현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음

－ 풀뿌리 민주주의 활성화 및 자치분권 추진

－ 주민 조례 발안제, 주민참여권 확대, 주민 감사 청구제, 참여 연령 인하 등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의 도입 및 보완

□ 국정 동반자로서의 지위 마련

○ 국정 거버넌스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자치단체가 국정 동반자로서 지위를 획득하여 지도·감독 대상에서 협력 관계로 발전함

－ 국가의 지도와 감독에서 벗어나 대등한 협력 관계로써 위치하게 되었음

(2) 정책적 의의

□ 지방자치 제도 발전 및 자치입법권 강화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지방자치 제도 발전 및 자치입법권 강화라는 매우 중요한 정책적 의의를 지니며 이는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 고유역할 역시 확대되었음을 의미함

－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도입 등 의회의 전문성 제고 및 책임 강화

2)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개요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다가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고, 이후 21대 국회에서 재발의되어 2020년 12월 9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22년 1월 13일 시행되었음
- 정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발의(2020. 7. 3.)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1 소위 의결(2020. 12. 2.)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결(2020. 12. 3.)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2020. 12. 8.)
- 국회 본회의 의결(2020. 12. 9.)
- 개정된 지방자치법 중 지방의회와 관련된 변화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주민 중심 지방자치 구현,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 및 투명성 강화, 지방의회의 책임성 강화, 지방의회 윤리 심사 징계에 대한 심사 및 자문 기능 강화를 꼽을 수 있음
- 이 중 지방의회 자치법규와 관련된 내용은 크게 지방의회 역량 강화 및 자치권 확대, 의회 책임성 및 투명성 제고로 구분할 수 있음
- 역량 강화 및 자치권 확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1] 지방자치법 내 의회 역량 강화 및 자치권 확대 관련 내용

분야	개정 전	개정 후
자치입법권 보장 강화 (제28조)	-조례의 제정 범위 침해 관련 미규정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 법령의 하위법령에서 위임내용·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하지 못하도록 규정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의회 사무처 소속 사무직원 임용권은 단체장 권한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 임용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분야	개정 전	개정 후
(제103조)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임용권의 일부를 지방의회의 사무처장 등에 위임 가능	부여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제41조)	-규정 없음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도만 의원정수 1/2 범위에서 정책연구위원 운영(21명)	-모든 지방의회에서 의원정수 1/2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 가능 ※단, 2023년까지 단계적 도입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 (제5장)	-회의 운영 방식 등 지방의회 관련 사항이 법률에 상세 규정	-조례에 위임하여 지역 특성에 맞게 정하도록 자율화

- 책임성 및 투명성 제고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2] 지방자치법 내 의회 책임성 및 투명성 제고 관련 내용

분야	개정 전	개정 후
정보공개 확대 (제26조)	-자치단체 정보공개 의무·방법 등 미규정	-의회 의정활동, 집행부 조직·재무 등 정보공개 의무·방법 등에 관한 일반규정 신설 -정보 플랫폼 마련으로 접근성 제고
의정활동 투명성 강화(제74조)	-지방의회 표결방법의 원칙 관련 근거 미비	-기록표결제도 원칙 도입
지방의원 겸직 금지 명확화 (제43조)	-겸직 금지 대상 개념 불명확 -겸직 신고 내역 외부 미공개	-겸직 금지 대상 구체화 -겸직 신고 내역 공개 의무화
지방의회 책임성 확보(제65조)	-윤리특위 설치 임의규정 -윤리심사자문위 설치 미규정	-윤리특위 설치 의무화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 설치, 의견 청취 의무화

2.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회 권한 및 자치권 변화

1) 자치입법권 강화

-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조례제정권 강화 등 자치입법권 강화와 관련된 내용을 명시하고 있음
- 「지방자치법」은 제28조에 따라 법령 범위 내에서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내용과 범위를 제한·규정할 수 없음

2)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전에는 시·도 의회 사무처의 소속 직원 임용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있었으나 개정 이후 시·도 및 시·군·구의회의 사무처 소속 직원의 임용권이 의회 의장에게 부여되었음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제103조, 104조)으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을 의원정수 50% 범위 내에서 의장이 임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용권을 위임하는 공무원 범위가 삭제됨
 -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 소속 공무원이 의회 사무처장·국장·과장 및 직원의 업무를 겸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지방자치단체장의 임용권 위임범위 등에 대한 규정을 삭제함
-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력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역시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지방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용권을 부여하고 지방의회에 인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며, 집행기관 또는 지방의회 간 인사 교류가 가능하게 하는 등 지방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 체계를 개편하였음
 - 지방의회의 의장을 임용권자로 규정(제6조)
 - 지방의회에 인사위원회 설치(제7조 등)
 - 인사관리 체계를 개편함에 따라 임용권자별로 인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시·도의회 및 시·군·구의회에도 각각 인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음
-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 내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의 인사 교류 근거를 마련하였음
 - 행안부-지방의회 간, 자치단체의 집행기관-지방의회 간, 지방의회 상호 간(광역의회-자치구의회, 자치구의회 상호 간) 인사 교류 근거 마련

3)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 지방의회의 자치권 강화, 주민 참여 확대 등 지방의회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의회 및 의원의 역량과 전문성 향상이 요구되었고 이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이 도입되었음
-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음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전에는 제주도만 의원정수의 1/2 범위 내에서 정책 자문위원을 운영할 수 있었으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 모든 지방의회가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지방의회 의원정수의 1/2 범위 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이 마련됨
- 다만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의원 정수의 4분의 1 범위에서 도입하고 그 다음 해까지는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연차적으로 도입하도록 하는 부칙 조항을 두었음
-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지방의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도입된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명칭·직무·임용 절차 등을 규정하고 지방의원 의정활동의 전문성 지원 취지를 반영하되 개인 보좌관화 방지를 위해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
-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 등과 관련하여 정책지원관 명칭, 직무 범위, 임용 절차 등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하며, 이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음

[표 3] 지방자치법 시행령 내 정책지원관 직무 관련 조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정책지원관의 직무 등)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정책지원 전문인력(이하 “정책지원전문인력”이라 한다)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② 정책지원전문인력의 직무범위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제1항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정책지원전문인력의 명칭은 정책지원관으로 한다.

-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함께 통과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급이나 공무원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음
- 정책지원관의 직급은 전문위원과의 관계나 집행부 직원과의 직급 형평성 등을 고려해 시·군·구의 경우 7급 이하로 채용하고 전문성 확보를 위해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일반임기제공무원만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함

[표 4] 정책지원관 채용 및 직급 관련 조항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등) ⑤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의회사무기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1. 시·도의 경우: 6급 이하 2. 시·군·구의 경우: 7급 이하 ⑥ 제5항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이하 “일반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만으로 임명할 수 있다.
--

4)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 및 투명성 강화

- 정례회, 임시회 등 의회 소집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등 지방의회 운영에 있어 자율성을 확대하였음
- 「지방자치법」 제53조, 제54조, 제74조, 제76조 “의회 운영 자율성 강화” 조항에서 정례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표결, 의안 발의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게 되었음
- 의회의 의정활동을 종합적으로 공개하는 등 정보공개 범위가 확대되었고 주민에 대한 책임성 역시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선되었음
 - 「지방자치법」 제26조, 제84조에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및 회의록 작성 내용 규정
 - 지방의회 의정활동, 집행기관의 조직, 재무 등 주요 지방자치단체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

5) 지방의회 책임성 강화

-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지방의원 겸직 금지 등 의원의 의무를 강화하는 조항을 법령에 규정하여 의회의 책임성을 강화하였음
 - 지방의원 겸직 등 금지(제43조) 명확화, 겸직 신고 내역 공개 의무화
 - 의원의 의무(제44조) 등 의회 책임성 및 투명성 제고 조항 제도화

6) 지방의회 윤리심사 징계에 대한 심사 및 자문기능 강화

- 윤리특별위원회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의 감시를 강화하는 등 지방의회 윤리심사 징계에 대한 심사 및 자문기능이 강화되었음
 - 윤리특별위원회 설치(제65조),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제66조)

[표 5] 지방의회 윤리심사 징계 및 심사자문기능 강화 관련 조항

「지방자치법」

제65조(윤리특별위원회) 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별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지방의회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66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①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장의 자문과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지방의회의 의장이 위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3. 지방자치법 개정 및 서대문구의회 자치법규 정비 현황

1) 서대문구의회 관련 자치법규(2023.9.20. 기준)

○ 2023년 9월 현재 서대문구의 의회 관련 자치법규는 51개가 있으며
23개의 조례와 28개의 규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표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자치법규 현황]

법규명	제·개정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2023-02-2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22-12-3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22-12-3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2022-03-0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공인 조례	2022-03-0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사무국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2023-05-3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2022-12-3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2022-03-0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2019-04-1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2023-02-2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2022-10-1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2018-01-0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인사위원회 실비 보상 조례	2022-03-0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2023-07-0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2022-03-0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2022-03-0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2022-12-30

법규명	제·개정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2022-03-0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	2019-07-1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표창 조례	2021-04-0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2022-11-1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2021-12-2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2021-12-2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2022-03-0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사무국 사무분장 규칙	2023-05-3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2022-03-0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2019-04-1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2022-03-0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규칙	2022-03-0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2022-03-0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	2022-03-0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2015-11-0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2015-11-0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 회의장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등의 허가에관한규정	2006-04-0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공무원증 규정	2022-08-1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2023-09-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방청 및 출입에 관한 규정	2023-02-0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정	2019-01-0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참관에 관한 규정	2015-12-3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장 규정	2017-06-28

법규명	제·개정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의원 청가 및 결석에 관한 규정	2023-06-07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경위근무규정	1999-06-28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정	1991-05-16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	1992-04-07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회의록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	2008-03-0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2022-06-20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간행물보존에관한내규	1999-06-28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청원운영심사처리내규	2008-03-0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회의록작성실무에관한내규	2008-03-0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2022-10-1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2023-07-05

2)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서대문구의회 자치법규 정비 현황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의회 관련 규정이 서대문구의회 관련 자치법규에 반영되어 정비되었는지 현황 점검을 통해 개정 방향을 모색함

□ 의정활동비 등 결정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의 제2조, 제3조, 제6조 등에 해당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의원의 겸직 신고 등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제7조(겸직 신고)에서 연 1회 이상 의원에게 겸직 신고에 대한 내용을 안내하고 겸직 신고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정기적으로 현행화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정례회, 임시회, 개회·휴회·폐회와 회의 일수

-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기존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함
- 관련 주요 내용은
 - 연간 총회의 일수는 120일을 초과할 수 없음 (기 반영 내용)
 - 정례회 개최 일수는 65일 이내(기 반영 내용)
 - 임시회는 15일 이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 의원 의안 발의와 관련

- 서대문구의회는 의원 의안 발의 관련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제18조에 따라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를 통해 의안을 발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개정 이전의 지방자치법의

내용이기도 함

-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원 발의 요건을 의회 자율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지만 서대문구의회는 이를 아직 조례로 반영하지 않았음

□ 의회 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사무국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6조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정책지원 전문인력 배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사무국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5조에 정책지원관 관련 조항을 두고 있음
- 2022년 3월 개정 시 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두도록 하였으나 2023년 5월에는 위원회 또는 사무국에 정책지원관을 두되, 구체적인 배치는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치도록 개정되었음

□ 윤리특별위원회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 법 개정으로 강제 규정이 된 윤리특별위원회 설치와 관련해 서대문구의회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에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규정하고 있어 법 개정 이전에 이미 반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됨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관련 조항은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제7조 제4항에 겸직 신고와 관련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음 (2023.2.22. 개정)

□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 서대문구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장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을 통해 비용추계 자료 등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결산검사위원 확대

- 결산검사 위원 확대와 관련해 서대문구의회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를 통해 기존 5인에서 9인으로 확대하였음

[표 기 서대문구의회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 반영 여부]

주요 내용	관련 법령 조항 및 조문	반영 사항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결정	<지방자치법>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비용은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검직 신고 등	<지방자치법> 제43조(검직 등 금지) ③ 지방의회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로 정한다. 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검직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연 1회 이상 해당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서대문구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제7조(검직신고)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지방자치법> 제46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 로 정하여야 한다.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명령 「서대문구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정례회, 임시회 등 회기 운영 관련 내용 반영
정례회	<지방자치법> 제53조(정례회) ①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② 정례회의 집회일, 그 밖에 정례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로 정한다.	

주요 내용	관련 법령 조항 및 조문	반영 사항
임시회	<지방자치법> 제54조(임시회)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u>조례</u> 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지방의회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지방의회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의 순으로 소집할 수 있다.	
개 회 · 휴 회 · 폐 회 와 회의일 수	<지방자치법> 제56조(개회 · 휴회 · 폐회와 회의일수) ① 지방의회의 개회 · 휴회 · 폐회와 회기는 지방의회가 의결로 정한다. ②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u>조례</u> 로 정한다.	
의원 의안 발의 요건	<지방자치법> 제76조(의안의 발의) ①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u>조례</u> 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지방의회의원의 찬성으로 발의한다.	의안 발의 요건은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에 규정되어 있음 : 조례로 미반영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지방자치법> 제78조(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u>조례</u> 로 정한다.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지방자치법>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수는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u>조례</u> 로 정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 · 감독하고 법령과 조례 · 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 · 교육 · 훈련 · 복무 ·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서대문구의회 사무국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정책지원 전문인력	<지방자치법>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u>조례</u>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서대문구의회 사무국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 5조

주요 내용	관련 법령 조항 및 조문	반영 사항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직급·직무 및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 등)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정책지원 전문인력(이하 “정책지원전문인력”이라 한다)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② 정책지원전문인력의 직무범위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제1항의 범위에서 <u>조례</u>로 정할 수 있다. ③ 정책지원전문인력의 명칭은 정책지원관으로 한다.	
윤리특별위원회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지방자치법> 제65조(윤리특별위원회) 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제66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①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장의 자문과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	「서대문구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결산검사위원 확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감사위원의 선임) ① 법 제15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하는 감사위원(이하 “감사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시·도의 경우 7명 이상 20명 이내,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며, 그 수·선임방법·운영과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u>조례</u>로 정한다.	해당 내용은 「서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4. 서대문구의회 운영 관련 자치법규 개정 방향

□ 정비가 필요한 의회 자치법규

-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반영할 필요가 있거나 조례에 위임되어 있음에도 이를 정비하지 않는 사항에 대한 입법 방안을 마련하고 의회의 효과적인 운영 등 의회와 관련하여 정비가 필요한 자치법규들을 추가 검토하여 정비 및 통합 등 정비 방향 제시
- 현재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서대문구의회 관련 자치법규는 대부분이 정비가 된 것으로 보이나 정책지원관 운영이나 의원발의 요건, 의정활동 정보공개 등에 대해서는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표 8]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정비가 필요한 서대문구의회 자치법규

주요 내용	관련 법령 조항 및 조문	정비 방향
정책지원 전문인력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 등)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정책지원 전문인력(이하 “정책지원전문인력”이라 한다)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② 정책지원전문인력의 직무범위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제1항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정책지원전문인력의 명칭은 정책지원관으로 한다.	정책지원관 운영 관련 별도 조례 입법 검토
의원 의안 발의 요건	<지방자치법> 제76조(의안의 발의) ①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u>조례</u>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지방의회의원의 찬성으로 발의한다.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등에 반영
의정활동 정보공개	<지방자치법> 제26조(주민에 대한 정보 공개) ① 지방자치단체는 사무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u>「공공기관의 정보</u>	의회 의정활동 공개 조례 등 입법 검토

주요 내용	관련 법령 조항 및 조문	정비 방향
	<u>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집행기관의 조직, 재무 등 지방자치에 관한 정보(이하 “지방자치정보”라 한다)를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u>	

□ 정책지원관 운영 관련 조례 입법 검토

- 정책지원관 관련하여 서대문구의회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사무국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사무국 사무분장 규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정책지원관 임용, 교육,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 등을 규정하는 조례는 부재함
- 향후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검토는 제3장에서 다루기로 함

□ 의원 의안 발의 요건 조례 반영 필요

- 앞서 지적한 대로 「지방자치법」은 의원 의안 발의 요건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서대문구의회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제18조제1항1))에 규정하고 있음
- 서울 자치구들은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관악구의회, 구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송파구의회, 동작구의회 등), 의회 기본조례(영등포구의회, 용산구의회, 중랑구의회 등)에 의원 발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1)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의원이 발의하거나 구청장 또는 위원회가 제출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발의 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정한다.

[표 9]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 의원 발의 요건 조항 규정(예시)

관악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구로구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안의 제출·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구청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제안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제안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신설 2022.8.2.>	제6조(의안의 발의) 법 제76조에 따라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본조신설 2022.2.17.]

- 서대문구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입법되어 있는 만큼 해당 조례에 의원 발의 요건을 규정하거나 혹은 해당 요건을 포함한 서대문구의회 기본조례를 입법하는 방안을 제안함

□ 의정활동 정보 공개 관련 입법 검토

-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26조 제1항에 따르면 자치단체는 사무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서대문구의회는 조례나 규칙을 통해 의정활동 정보 공개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입법 검토가 필요함
- 행정안전부는 2022년 6월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가이드라인」을 통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에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표준모델을 마련했음
 - 지방의회 관련 의회 운영 분야, 의원 활동 분야, 의회 사무 분야 등 3개 분야 23건의 정보 공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표 10]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방의회 관련 정보공개 항목

의회 운영	의원 활동	의회 사무
①의회 회기운영	⑩회의록(본회의, 상임위)	⑲사무기구의 의원입법 지원현황
②의정비 심의위원회	⑪행정사무감사	⑳사무기구의 예결산분석 지원현황
③의원별 검직 현황	⑫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결과	㉑의회 민원처리 현황
④업무추진비 집행 현황	⑬행정사무조사	㉒의회발간물 현황
⑤국제교류 현황	⑭지방의회 질의답변 현황	㉓의회자료체계 구축 현황
⑥의원 정책연구 현황	⑮의안 처리현황	
⑦학술연구용역 현황	⑯위원회 심사안건 검토보고 및 심사보고서	
⑧의원 역량강화 현황	⑰의원별 회의 출석율 현황	
⑨행사개최 현황	⑱의원별 의정보고회 개최현황	

<출처 :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2022.6)

- 서울 자치구 중 일부 의회(영등포구의회, 노원구의회 등)에서는 의회 기본조례 등을 통해 의정활동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회의규칙을 통해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의회(양천구의회, 동작구의회 등)도 있음

[표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제48조(의정활동상황의 공개) ① 의장과 위원장은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의정활동상황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상황은 의회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개하되, 공개대상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간 회기운영계획, 회의체별 의사일정 및 회의록
2. 위원회 활동 결과 및 안건심사보고서
3. 행정사무감사·조사계획 및 결과보고서
4. 의안(청원을 포함한다)의 접수 및 처리 현황
5. 의원별 회의출석률, 의원발의, 구정질문 현황
6. 그 밖에 의회나 위원회가 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

- 별도의 조례 입법을 통해 의정활동 정보 공개를 규정한 의회도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2022년 4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활동 공개 조례」를 제정하고 상시 공개 의정활동 정보, 의정활동정보 공개시스템 구축, 의정활동정보공개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표 12] 제주특별자치도 상시 공개 의정활동 정보

도의회의원 의정활동		공개대상 정보 목록
입법활동	대표발의	대표발의 조례 내역
	공동발의	공동발의 조례 내역
	조례 제정 실적	조례 제정 내역
	조례 개정 실적	조례 개정 내역
의안심사 활동	예산 심사 활동	발언 및 심사 내역
	결산 심사 활동	발언 및 심사 내역
	행정사무감사 활동	지적 및 조치사항
의회 활동	상임위 출석률	출석일수/회의일수
	본회의 출석률	출석일수/회의일수
	특별위원회 출석률	출석일수/회의일수
	도정질문 및 교육행정질문	건수 및 발언 내역
기타	의정연수 및 연구단체 참가 실적	횟수 및 내역
	청원 실적	청원 소개 내역
	우수조례·의정대상 등 수상내역	수상내역
	제재 및 징계 건수	징계 내역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활동 공개 조례 제5조제1항 별표>

- 자치구를 비롯한 기초의회에서는 아직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같이 별도의 조례를 입법하고 있는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가 주민의 알 권리와 의정활동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선도적으로 별도 조례 입법을 검토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겸직 신고 공개 시기 명시

-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겸직 신고의 공개 방법에 대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
- 현행 「서대문구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제7조(겸직 신고)에 ‘의장은 연 1회 이상 의원에게 겸직 신고에 대한 내용을 안내하고 신고 내용을 점검한다’ 및 ‘의장은 겸직신고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현행화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 ‘정기적’이라는 모호한 표현보다는 “매해 00월 00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등의 구체적인 시기 및 날짜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명시하도록 개정할 수 있음

5. 서대문구의회 기본조례 입법 제안

1) 의회 기본조례 제정의 필요성

□ 종합적·체계적인 의회 운영 관련 기본조례 필요

-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회 회의 운영 자율화, 의회 인사권 독립 등 조례 제·개정 사항이 많아지면서 이에 맞춰 기존 의회 관련 조례들을 통합하여 기본조례를 제정하는 의회가 늘고 있음
- 서대문구의회도 주민들이 의회 운영 관련 내용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등 조례 입법 검토를 제안함

□ 전국 48개 지방의회가 의회 기본조례를 제정

- 최근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들이 개별 조례 및 규칙으로 산재되어 있는 의회 운영 관련 조례를 통합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본조례를 제정하는 추세임
- 2023년 10월 현재 전국 48개의 지방의회에서 의회 운영에 관한 「의회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있고 이 중 광역의회는 서울, 경기, 강원, 광주, 대전, 울산, 전남, 전북, 충남, 충북 등 10개 지역에서 제정하였음
- 자치구의회 중에는 서울 11곳, 경기 5곳, 대구 2곳, 대전 5곳, 전남 4곳, 경북 2곳, 충남 2곳, 충북 3곳에서 제정했으며 인천, 전북, 광주, 부산 등에서 각각 한 개의 자치구의회가 기본조례를 제정, 총 38개 자치구의회에서 기본조례를 제정하였음

2)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 기본조례 제정 현황 비교

□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 중 기본조례를 제정한 곳은 11곳

○ 의회 기본조례를 제정한 전국의 38개 자치구의회 중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는 11곳에 해당함

[표 13]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 기본조례 제정 현황

지역명	제·개정일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기본조례	2023.09.20.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기본조례	2023.03.02.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조례	2022.12.29.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기본조례	2023.02.23.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조례	2022.07.1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조례	2023.10.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조례	2023.10.05.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기본조례	2022.12.30.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기본조례	2022.12.29.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조례	2022.10.11.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조례	2023.10.05.

○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의회 중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 의회 기본조례를 제정한 곳은 광진구의회, 노원구의회, 도봉구의회, 성북구의회, 용산구의회, 은평구의회, 종로구의회, 중랑구의회 등 8개 의회임

-도봉구의회, 용산구의회, 은평구의회, 중랑구의회 등 4개 의회의 기본조례 주요 내용은 총칙, 정례회 등 회기 운영(회의 운영), 의회의 기관, 의원, 위원회와 위원,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답변, 질서와 경호로 구성되어 있음

-강동구의회와 영등포구의회는 기본조례 주요 내용은 총칙, 의원, 의회의 기관, 회기 운영, 위원회와 위원,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 답변 등, 질서와 경호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표 14]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 기본조례 비교

지방의회 (최초 제정일)	기본조례 내용 구성
강동구의회(2015.5.6.), 영등포구의회(2017.9.21.)	제1장 총칙, 제2장 의원, 제3장 의회의 기관 등, 제4장 회의(회기) 운영, 제5장 위원회와 위원, 제6장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 답변 등, 제7장 질서와 경호 등
도봉구의회(2022.1.13.), 용산구의회 (2022.1.28.), 은평구의회(2022.1.13.), 중랑구의회(2022.4.12.)	제1장 총칙, 제2장 의원, 제3장 의회의 기관 등, 제4장 (정례회 등) 회의 운영, 제 5장 위원회와 위원, 제6장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답 변 등, 제7장 질서와 경호 등
종로구의회 (2022.1.13.)	제1장 총칙, 제2장 의원, 제3장 회의, 제4장 의 장과 부의장, 제5장 상임위원회, 제6장 특별위 원회, 제7장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제8장 관 계공무원 등의 의회 출석과 답변, 제9장 의정자 문위원회, 제10장 의회사무국, 제11장 의회 공 인과 회장

-11개 자치구의회 중 의원 연구 활동 근거가 포함된 의회는 광진구의
회, 서초구의회, 성동구의회임

[표 15]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 기본조례에 의원 연구 활동이 포함된 경우

지방의회 (최초 제정일)	기본조례 내용 구성
광진구의회 (2023.3.2.)	제1장 총칙, 제2장 정례회 등 회기 운영, 제3장 의회의 기관 등, 제4장 의원, 제5장 위원회와 위원, 제6장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 및 답변 등, 제7장 질서와 경호, 제8장 의원연구활 동 등

지방의회 (최초 제정일)	기본조례 내용 구성
노원구의회 (2022.1.13.)	제1장 총칙, 제2장 정례회 등 회기 운영, 제3회 의회의 기관 등, 제4장 의원, 제5장 교섭단체 및 위원회와 위원, 제6장 회의, 제7장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 및 답변 등, 제8장 의정활동상황 등의 공개 , 제9장 질서와 경호
서초구의회 (2019.7.18.)	제1장 총칙, 제2장 정례회 등 회기운영, 제3장 의회의 기관 등, 제4장 의원, 제5장 위원회와 위원, 제6장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 및 답변 등, 제7장 질서와 경호, 제8장 의원연구활동 등
성북구의회 (2022.1.13.)	제1장 총칙, 제2장 의원, 제3장 의회의 기관 등, 제4회 정례회 등 회기 운영, 제5장 위원회와 위원, 제6장 질서와 경호, 제7장 의원연구활동 등

- 앞서 살펴본 대로 기본조례는 일반적으로 총칙, 회의(회기) 운영, 의회의 기관, 의원, 위원회와 위원,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답변 등, 질서 및 방청 등의 장으로 구성되며 일부 의회는 의원 연구활동 근거를 포함하기도 함
- 서대문구의회 기본조례 입법 시 서울특별시 타 자치구의회의 조례를 반영하여 의원 전원회의, 의원 연구 모임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기존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등은 폐지되어야 할 것임

Ⅲ. 의회 독립성 확보를 위한 개선 방안

1. 의회 인사권 독립 관련 법령 검토

1) 관련 법령 주요 내용

- 지방의회의 인사권에 대한 논의는 지방의회 출범 이후 끊임없이 이슈가 되어 온 부분임
- 1988년 지방자치법에서는 집행부의 장과 지방의회 의장이 인사권을 협의하도록 되어 있었고 1994년 지방의회 의장이 집행부의 장에게 인사권을 추천하여 임명하도록 개정되었지만 개정 이후에도 실질적인 개선 효과를 보지 못했음
- 2006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제주특별자치도에 한정하여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직원의 인사권을 사무기구 장에게 위임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의장의 권한으로 상임위원회별 정책 자문위원을 3명 이내로 위촉할 수 있도록 특례가 제정된 바 있음
- 이후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자치단체장이 행사함에 따라 지방의회의 독립성이 침해된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이어졌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지방의회 의장에게 의회 소속 직원의 임용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법령이 개정되었음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과거 자치단체장의 권한이었던 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되면서 지방의회가 독립적인 인사 운영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 인력 운영 자율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변환점이라고 볼 수 있음

-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자가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지방의회 의장으로 변경
- 지방의회 출범 30년 만에 지방의회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 운영을 자율적으로 행사하는 등 인사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지방자치법」 개정 내용

- 시·도의회가 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처 설치, 직원 기준, 직무 및 신분에 대해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사무처 등의 설치(제102조)
 - 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제103조)
 - 사무직원의 직무와 신분 보장(제104조)

[표 16] 「지방자치법」 제12절 사무기구와 직원

제102조(사무처 등의 설치) ① 시·도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를 둘 수 있으며,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직원을 둔다. ②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이나 사무과를 둘 수 있으며, 사무국·사무과에는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 및 직원(이하 제103조, 제104조 및 제118조에서 “사무직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수는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104조(사무직원의 직무와 신분보장 등) ① 사무처장·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 내용

○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2021.10.6.) 되었으며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2022.1.13. 시행)

-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력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의회 의장에게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부여
- 지방의회 의장 소속으로 자체 인사위원회 설치·운영 등 우수 인력의 확보와 시험관리 인력 등이 필요한 경우 집행기관에 시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행정안전부와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지방의회, 그리고 각 지자체 지방의회 간의 인사 교류 근거 마련(「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2(인사교류))

[표 17] 「지방공무원법」 개정 주요 내용(2022.1.13.)

- 지방의회 의장에게 지방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용권 부여
- 지방의회에 인사위원회 설치
- 행정안전부와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지방의회, 그리고 각 지자체 지방의회 간의 인사 교류 근거 마련
- 지방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 체계를 개편
- 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시도에 설치한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심사)
- 임용시험의 실시 (인사위원회에서 실시, 시·군·구의회의장은 시·도지사 소속 인사위원회, 시·도의회의장 소속 인사위원회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소속 인사위원회에 시험 위탁실시 가능)

○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지방공무원법」 개정(2022.1.13. 시행)에 따라 임용권 관련 규정 정비
- 지방의회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채용, 승진, 전보 등이 포함된 인력관리 계획 및 균형 인사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제3조의3, 제3조의4)

[표 18] 지방공무원 임용령 중 지방의회 인사권 관련 조항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의3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조직 목표의 달성에 필요한 효율적인 인적자원 관리를 위해 소속 공무원의 채용·승진·전보 및 경력 개발 등이 포함된 인력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조직 목표의 달성에 필요한 효율적인 인적자원 관리를 위해 소속 공무원의 채용·승진·전보 및 경력 개발 등이 포함된 인력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제3조의4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변경

2) 서대문구의회 인사 관련 자치법규

□ 관련 규정

- 서대문구의회 인사 관련 자치법규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사무국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사무국 사무분장 규칙」이 있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은 인사위원회 설치(제4조), 임기제공무원 인사관리(제24조), 심사승진(제30조), 근무부서 배치(제34조), 인사 협의(제40조)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사무국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제103조에 의거한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분장사무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서대문구 의회는 사무국을 설치하여 사무국장을 두며,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함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사무국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따른 전문위원, 정책지원관 관련 규정은 아래 표와 같음(제4조, 제5조)

[표 1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사무국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4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에 전문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하며 그 위원회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④ 전문위원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 이외에 일반적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5조(정책지원관) ① 의원의 의정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그 외 일반적 인 사무에 대해서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사무국 사무분장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사무국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6조에 의한 사무국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한 필요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함
- － 해당 규칙에 명시된 사무국장, 전문위원, 정책지원관의 사무분장은 다음과 같음

[표 20] 서대문구의회 사무국 사무분장 규칙

제2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3. 9. 17.>

1. 의회의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및 종합 조정
2. 의회소관 자치법규의 정비
3. 의회의 기록관리
4. 의회의 의전 및 홍보
5. 의회의 경비, 의회의 방청 및 참관
6. 의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7. 직원의 인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8. 각종 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9. 시설, 장비의 운영 및 관리
10. 의회소관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1. 문서관리, 보안 및 관인 관리
12.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총괄
13. 의회의 회의소집 요구서 처리
14. 본회의와 위원회의 의사일정 및 회의진행
15. 회의장의 의원석 배치
16. 회의장의 사용조정 및 협의
17. 회의의 관리와 회의록의 열람 및 복사
18. 회의록의 편집·발간·배부 및 보존
19. 의안문서의 작성·배부 및 관리
20. 의결문서의 정리 및 발간
21. 의안의 접수·인쇄·배부 및 위원회 회부
22. 청원의 접수·이송 및 처리결과 통지

제3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에 의한다.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전에 대한 검토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회에 대한 제공
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 시 소속위원회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6.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제4조(정책지원관)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개정 및 폐지,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 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3. 행정사무감사·조사 지원
4. 의원의 구정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의원연구단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2. 서대문구의회 사무기구 조직 및 인력 현황

1) 지방의회 사무기구 기능 및 역할

□ 의정활동 지원

○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기능적 측면에서의 의회 지원기능은 입법 기능, 정책지원, 행정 및 재정 관리 지원, 그리고 의사진행 지원 등으로 구분됨

- 입법 및 정책지원 기능은 주요 기능으로 입법 및 정책 입안 지원과 집행 심사 및 평가지원이 해당되며, 보조 기능으로 정보 및 자료제공 지원, 의정활동 홍보 지원, 대외협력 및 교류 지원 등이 해당
- 행정 및 재정관리지원 기능은 인사, 회계, 시설, 물품의 관리 등이 해당
- 의사진행 지원기능은 의정활동 과정의 절차적 측면을 지원

[표 21]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지원 주요 내용

지방의회 의정활동 지원기능		주요 내용
입법 및 정책 지원	입법 및 정책 입안 지원	법안의 검토, 법제 지원, 정책연구 조사 및 개발 등
	재정 집행 심사 및 평가 지원	예산분석, 결산 분석, 평가분석, 사무감사 등
	정보 및 자료제공 지원	자료 수집, 자료제공, 동향 조사, 현안 조사 및 분석 등
	의정활동 홍보 지원	보도자료 작성, 배포, 간행물 발간 등
	대외협력 및 교류 지원	의원의 외교, 교육 연수, 협정 체결 등
행정 및 재정 관리 지원		서무, 인사, 회계, 물품, 재산 등
의사진행 지원		회의 소집과 운영, 의사진행의 보좌 등

2) 서대문구의회 사무국 조직 현황

- 「지방자치법」 제102조에 따르면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이나 사무과를 둘 수 있으며, 사무국·사무과에는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과 직원을 둘 수 있음
- 사무직원의 정수 및 인건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규모에 따른 의회 사무기구의 종류 역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해지며, 서대문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내 “[별표4] 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및 직급기준”에 의거하여 의회 사무국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표 22] 의회 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및 직급 기준(제15조 제1항 관련)

의회사무기구명	설치 대상
의회사무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의회사무국	지방의원의 정수가 10명 이상인 시·자치구, 지방의원의 정수가 10명 이상이고 별표 3호 제1호 실·국의 설치기준에서 “인구 10만 미만” 구간의 기준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군
의회사무과	지방의원의 정수가 10명 미만인 시·군·구, 별표 3 제1호 실·국의 설치기준에서 “인구 10만 미만” 구간의 기준을 적용받는 군

- 서대문구의회 의원은 총 15명으로, 가~마까지 5개의 선거구가 있으며 선거구별로 2~3명을 선출하여 현재 지역구 전체 13명의 의원과 비례대표 2명으로 구성됨
-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8석, 국민의힘 7석으로 구성됨
- 상임위원회로는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재정건설위원회 3

개가 있고 의회운영위원회는 다른 상임위와 겸직이 가능하여 모든 상임위가 7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서대문구의회 사무국 설치와 관련한 자치법규는 「서대문구의회 사무국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서대문구의회 사무국 사무분장 규칙」 임
- 서대문구의회 사무국장은 제2조에 따라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의회 운영계획 수립 등 의회 관련 업무를 총괄함

□ 서대문구의회 사무국은 1실 4팀으로 구성

- 2023년 11월 현재 서대문구의회 사무기구는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무국장 아래 1실, 4팀으로 이루어짐
- 전문위원실은 5인, 의정팀은 15인, 의사팀은 6인, 홍보팀은 7인, 정책지원팀은 8인으로 구성됨

[표 23] 서대문구의회 사무국 조직도 및 업무 분장

구분	총원	주요 업무
사무국장	1	의회사무국 총괄
전문위원실	5	실장: 전문위원실 업무 총괄 실원: 각 위원회 보좌, 소관 위원회 안전 검토 보고 및 소관위원회 관련 행정사무감사 지원 등
의정팀	15	팀장: 의원 의정활동 지원업무 총괄, 의회 행사업무 총괄, 중대재해산업법 총괄, 의정 업무보고 팀원: -청사 관리, 물품구매, 직원 복무 관리, 업무추진비 등 -시설, 전산 장비 등 유지관리 -서무, 의회 업무보고 자료 작성, 공무국외 출장 총괄, 의회행사 계획수립 및 개최, 사무분장, 의회 운영계획 수립 및 조정 등 -의원 신상관련, 재산등록, 윤리 및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의원교육, 복리후생, 위원회 위원 추천 및 관리, 인사업무 등 - 의장/부의장 비서, 의회 도서관리 지원 등

구분	총원	주요 업무
의사팀	6	팀장: 의사팀 업무 총괄, 본회의 의사진행 보좌 및 의사일정 관리, 본회의 및 임시회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 조정
		팀원 - 회의록 발간, 회의내용 속기 및 회의록 인터넷 등록 - 의회 운영 기본일정 수립 및 조정, 집회요구서 처리 및 회의소집 공고, 구정(서면)질문 접수 및 이송, 의사팀 서무 업무 등
홍보팀	7	팀장: 의정활동 홍보 업무 총괄, 재정건설위원회·특별위원회 운영 보좌
		팀원 - 의회 홍보 종합계획 수립,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청소년의회 운영 업무, 팀 서무 등 - 본회의장 및 상임위 회의실 방송장비 운영, 전체 회의실 영상녹화 및 인터넷 방송 송출, 녹화영상 편집 및 활용 관련 업무, 상임위원회 회의실 빔프로젝터 유지관리 - 언론보도 콘텐츠 기획, 보도자료 작성, 언론사 관련 업무, 의정홍보물 제작, 언론 동향 파악, 의장 개회사 등 - 의정활동 사진 담당, 청사 내외 홍보게시판 운영관리, 구의회 공식 SNS운영, 홍보 콘텐츠 제작 등 - 의회 누리집 관리, 의정홍보물 제작, 의정활동 촬영 지원 등
정책지원팀	8	-팀장: 정책지원팀 업무 총괄, 의원 연구단체 운영 및 지원 총괄 등
		팀원(정책지원관) - 정책지원관 1명 당 의원 2명 보좌(의장 제외) - 의정 자료 수집·조사·연구 -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의원 의정활동 지원 - 기타 의원 의정활동 사항 지원 - 의원 연구단체 운영 및 지원 - 의정활동 관련 자료편찬에 관한 사항 - 연구활동 계획 심의 및 변경 승인, 의원연구단체 등록 접수 등 - 팀내 운영계획 수립, 물품관리, 의정 활동 관련 민원접수 처리 등

<출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홈페이지>의회 안내> 의회 구성> 의회 사무국>

3.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 사무기구 운영 현황 비교

1) 사무기구 조직 현황

(1) 일반현황

- 현재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 사무기구는 대부분 사무국장 아래 전문위원실, 의정팀, 의사팀, 홍보팀, 정책지원팀으로 구성되어 있음
 - 중구는 시책사업추진반, 중랑구는 의정기록팀, 은평구와 강동구는 비서팀, 송파구는 운영지원팀과 비서팀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음
- 2023년 10월 현재, 의회 홈페이지를 기준으로 파악해 본 결과,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 각 사무국은 사무국장을 포함하여 약 32~5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의회별 정원 및 세부 인력 구성은 다음과 같음

[표 24] 서울특별시 자치구 의회별 사무기구 현황(2023.11.15.기준)

구분	의원 수	사무국 총원	사무국장	전문위원실	의정팀	의사팀	홍보팀 (공보팀)	정책지원팀	기타	정책지원관 수(소속)
종로구	11	32	1	5	12	9	5			5 (의사팀)
중구	9	34	1	2	12	7	4	5	3(시책사업 추진반)	4
용산구	13	32	1	9	12	6	4			5 (전문위원실)
성동구	14	28	1	6	11	6	4			2 (전문위원실)
광진구	14	34	1	4	13	5	4	8		7
동대문구	19	35	1		9	5	5		15 ²⁾	8 (전문위원실)
중랑구	17	40	1	3	13	5	5	9	4 (의정기록)	8
성북구	22	42	1	4	13	7	5	12		11

구분	의원 수	사무국 총원	사무 국장	전문 위원실	약팀	약팀	홍보팀 (공보팀)	정책 지원팀	기타	정책지원관 수(소속)
강북구	14	41	1	5	14	7	5	9		7
도봉구	14	38	1	3	13	8	5	8		7
노원구	21	43	1	4	12	8	5	13		10
은평구	19	41	1	14	8	7	5		6 (비서실)	9 (전문위원실)
서대문구	15	44	1	5	16	6	8	8		7
마포구	19	36	1	4	13	6	7	5		4
양천구	18	39	1	3	12	8	5	10		8
강서구	20	45	1	9	15	8	4	8		7
구로구	16	39	1	6	11	5	5	11		8
금천구	10	30	1	3	13	11	5			5 (의사팀)
영등포구	17	40	1	4	13	8	5	9		8
동작구	17	40	1	4	15	7	4	9		8
관악구	22	46	1	5	12	11	5	12		10
서초구	16	39	1	5	13	7	4	9		8
강남구	23	54	1	6	18	9	6	14		11
송파구	26	52	1	10	12	5	4		4(비서팀) 16(운영지원)	13 (운영지원팀)
강동구	18	44	1	4	15	7	5	9	4 (비서팀)	8

2) 인사관리팀 3명, 운영행정기획위원회 6명, 복지건설위원회 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운영행정기획위원회에 전문위원 2명, 정책지원관 3명이 포함됨. 복지건설위원회에는 전문위원 2명과 정책지원관 4명이 포함됨

(2) 정책지원관 인력 배치 현황

-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의회의 대부분은 전문위원실, 의정팀, 의사팀, 홍보팀 (공보팀)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정책지원실/팀의 유무는 지역마다 상이함

[표 25] 서울특별시 자치구 의회별 정책지원관 사무국 배치 현황

정책지원관 배치	해당 지방의회
정책지원팀	서대문구의회, 중구의회, 광진구의회, 중랑구의회, 성북구의회, 강북구의회, 도봉구의회, 노원구의회, 마포구의회, 양천구의회, 강서구의회, 구로구의회, 영등포구의회, 동작구의회, 관악구의회, 서초구의회, 강남구의회, 강동구의회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	동대문구의회, 용산구의회, 성동구의회, 은평구의회
기타	종로구의회, 금천구의회(의사팀) 송파구의회(운영지원팀-타 자치구의회 정책지원팀과 유사)

- 정책지원관이 신설되면서 사무국에 정책지원 관련 별도팀이 신설된 서울특별시 내 자치구의회는 총 18곳임
 - 18개의 자치구의회 사무처(국)가 전문위원실, 의정팀, 의사팀, 홍보팀, 정책지원팀으로 구분되어 있음
 - 중구의회, 광진구의회, 중랑구의회, 성북구의회, 강북구의회, 도봉구의회, 노원구의회, 서대문구의회, 마포구의회, 양천구의회, 강서구의회, 구로구의회, 영등포구의회, 동작구의회, 관악구의회, 서초구의회, 강남구의회, 강동구의회
- 일부 자치구의회는 경우 정책지원관이 전문위원실 또는 각 위원회 소속으로 구분되어 있음
 - 종로구의회, 금천구의회 정책지원관은 의사팀 소속
 - 용산구의회, 성동구의회, 은평구의회, 동대문구의회 정책지원관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 소속
 - 송파구의회 정책지원관은 운영지원팀 소속
- 송파구의회는 경우 정책지원관이 운영지원팀에 소속되어 있는데, 운

영지원팀 구성을 살펴보면 타 자치구의회의 정책지원팀과 거의 유사한 것으로 보임

- 정책지원관이 별도 팀으로 구성된 자치구의회는 72%,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 배치는 16%, 기타 12%로 정책지원팀/실을 별도로 개설한 의회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별도 팀(정책지원팀/실) 신설

- 정책지원 전문인력(이하 정책지원관)이 신설되면서 의회 사무국에 정책지원팀이 개설된 자치구의회는 서대문구의회를 비롯하여 중구의회, 광진구의회, 중랑구의회, 성북구의회, 강북구의회, 도봉구의회, 노원구의회, 마포구의회, 양천구의회, 강서구의회, 구로구의회, 영등포구의회, 동작구의회, 관악구의회, 서초구의회, 강남구의회, 강동구의회로 모두 18개 의회임

[그림 1] 정책지원팀이 별도로 개설된 의회의 조직도 예시(광진구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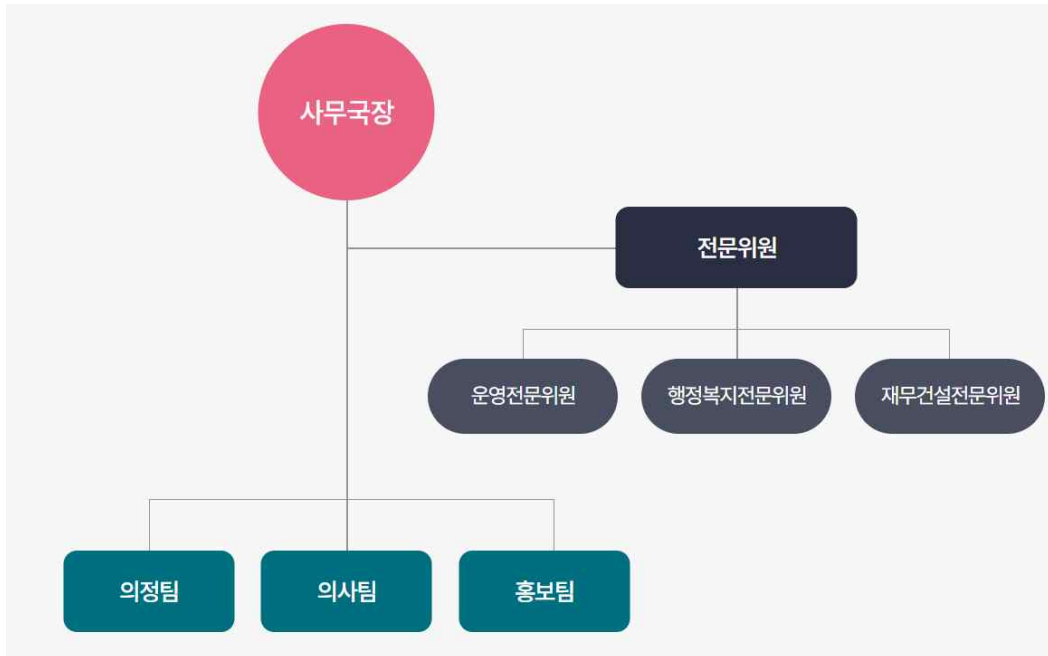
(출처: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홈페이지)

- 이 중 정책지원관 1인이 담당하는 의원의 수가 2명으로 정책지원관과 의원의 수가 1:2 매치 된 곳은 6개 의회임
- 광진구의회, 성북구의회, 강북구의회, 도봉구의회, 서초구의회, 구로구의회는 정책지원관 1명이 담당하는 의원의 수가 2명임
- 정책지원팀 등 별도팀을 신설하여 정책지원관을 운영하는 경우 정책지원관에 대한 의원 개인 보좌관화 방지 등에 유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다만 정책지원관을 의원별로 나누어 배치하는 경우 담당 의원의 특성 및 업무 스타일에 따라 정책지원관의 업무 강도에 상당 부분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정당이 다른 의원 두 명의 의원을 한 명의 정책지원관이 지원하는 경우 정파적 갈등이 발생할 우려도 존재함
- 정책지원관이 의원의 지휘·명령을 따르는 동시에 사무기구 장의 감독을 따르는 이중적 명령체계의 적용을 받음으로 인해 혼란이나 갈등이 발생할 여지도 있어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함

□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 소속

- 정책지원관이 전문위원실에 소속된 지역 의회는 용산구의회, 성동구의회, 은평구의회, 동대문구의회 네 곳임
- 성동구의회는 정책지원관 1인이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재무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특별위원회 등 4개의 위원회 중 각각 2개의 위원회를 보좌하고 있음
- 동대문구의회는 정책지원관을 운영행정기획위원회에 4명, 복지건설위원회에 4명씩 배치하여 상임위원회 내에서 의원들을 보좌하도록 하고 있음
- 동대문구의회 정책지원관 1명이 담당하는 의원의 평균 수는 2.4명임

[그림 2] 정책지원관이 전문위원실에 배치된 경우 조직도(은평구의회)



(출처: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 정책지원관이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정책지원관이 전문위원에게 업무 지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이기 때문에 실제 정책지원관의 업무 외에 추가로 담당해야 하는 업무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 또한 전문위원 역시 의안을 검토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주된 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안 검토와 더불어 정책지원관의 업무 검토를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이처럼 정책지원관이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정책지원관이 전문위원의 지휘를 받아야 하므로 이들 간 업무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는다면 의정활동 지원이라는 본래 취지에 어긋날 가능성 있음

□ 기타(의사팀, 운영지원팀) 소속

- 정책지원팀, 전문위원실, 상임위원회 외에 정책지원관을 의사팀이나 운영지원팀에 배치한 자치구의회는 3곳임
 - 금천구의회와 송파구의회는 정책지원관과 의원 비율이 2:1, 종로구는 2.2명임
- 종로구의회와 금천구의회는 정책지원관을 의사팀에, 송파구의회는 운영지원팀에 배치하고 있음
 - 종로구의회는 의사팀 내 정책지원관 5명 배치
 - 금천구의회는 의사팀 내 정책지원관 5명 배치
 - 송파구의회는 운영지원팀 내 정책지원관 13명 배치
- 다만 송파구의회 운영지원팀의 경우 구성을 살펴보면 정책지원관 채용 및 운영, 교육 진행 담당자를 제외하고 정책지원관으로 이루어져 있어 정책지원팀과 명칭만 다를 뿐 거의 같은 구조라고 볼 수 있음
- 기존 팀에 정책지원관을 배치하는 경우 명확한 업무 분장이 어려울 수 있고, 해당 팀장의 지휘 아래 놓이게 되면서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이라는 목적 달성이 어려울 수 있음

2) 부서별 업무 현황

(1) 주요 업무

- 서울특별시의 많은 자치구의회 사무기구가 전문위원실, 의정팀, 의사팀, 홍보팀, 정책지원팀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서대문구의회를 기준으로 팀별 주요 업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전문위원실

- 전문위원실은 각 위원회를 보좌하면서 소관위원회 관련 사항을 담당하고 있음
 -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
 -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 사항 관련 자료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 위원회 제공
 -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 시 소속 위원에 대한 질의자료 제공
 -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등

□ 의정팀

- 의정팀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을 지원하고, 의정 업무보고, 의회 행사업무 등을 총괄함
 - 의회 운영계획 수립 및 조정
 - 의회 업무보고 자료 작성
 - 의회 행사 계획 수립 및 개최
 - 의원 세미나, 공무국외 출장 총괄, 직원 관외출장 여비 관리 등

-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의원 교육, 의장협의회 지원
- 인사 채용, 평가, 인사위원회, 직원 임면 등 인사관리
- 예산편성 및 집행 총괄
- 의정운영 공통경비 집행
- 결산검사 관련 업무
- 의장 비서 및 의전 수행, 국장실 비서 및 행사 의전 지원
- 의장·부의장 민원 접수 및 처리 등

□ 의사팀

- 의사팀은 본회의 의사일정 관리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정함
- 본회의 의사진행 보좌 및 의사일정 관리
- 본회의 및 임시회 소집·운영 조정
- 의회 운영 기본일정 수립 및 조정
- 집회요구서 처리 및 회의 소집 공고
- 구정 질문 접수 및 이송, 서무 업무 등
- 회의록 발간, 회의 내용 속기 및 인터넷 등록

□ 홍보팀

- 홍보팀은 의정활동 홍보 및 계획 수립, 보도자료 작성 등 홍보 전반 업무를 조정·담당함
- 의회 홍보 종합계획 수립
- 의정 모니터 구성 및 운영
- 의원 관내 행사 관리

- 본회의장 및 상임위 회의실 방송 운영, 회의 녹화 및 인터넷 방송 송출
- 언론보도 콘텐츠 기획 및 보도자료 작성
- 의정 소식지, 의정지 등 홍보물 제작, 언론사 관련 업무 담당

□ 정책지원팀

- 정책지원팀(정책지원관)의 업무는 자치구의회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큰 틀에서는 거의 동일함
- 서대문구의회 정책지원팀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정책지원관은 의정 자료 수집·조사·연구 등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 규정과 관련된 의원 의정활동 지원 업무를 담당함
- 조례 제정 및 개정, 폐지,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 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 의원의 서류 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 행정사무 감사·조사 지원
- 의원의 구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 의원 연구단체 운영 및 대원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등

(2) 정책지원관의 의원 보좌 현황

□ 정책지원관 1인이 보좌하는 의원 수는 2명에서 7명

- 정책지원팀(혹은 정책지원실) 구성은 보통 정책지원팀을 총괄하는 팀장 1명을 포함하여 정책지원관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임
-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별 사무국 정책지원팀에서 회계 및 교육 담당 인원을 제외하면 정책지원관 1인이 보좌하는 담당 의원의 수는 2명부터 7명까지 최대 5명까지 차이가 존재함
-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의원정수의 절반을 확보한 자치구는 광진구의회, 성북구의회, 강북구의회, 도봉구의회, 구로구의회, 금천구의회, 서초구의회, 송파구의회로 8개 의회가 해당됨
- 정책지원관 1명이 보좌하는 의원 수가 최대인 지역은 성동구의회로 7명임
- 다만 현재 정책지원관 현황은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파악했기 때문에 채용 중에 있거나 홈페이지에 업데이트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음

□ 서대문구의회 정책지원관 1인이 보좌하는 의원의 수는 2.1명

- 서대문구의 경우 정책지원관 7인이 15인의 의원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정책지원관 1인이 보좌하는 의원의 수는 2.1명임
- 이는 서울특별시 전체 기초자치단체 내에서는 9번째로 강남구의회, 노원구의회, 은평구의회, 중랑구의회, 영등포구의회, 동작구의회와 동일함

[표 26] 서울특별시 자치구 의회별 정책지원관 1인당 담당 의원 수

	구분	지역구 의원정수	정책지원관 수 (팀장 등 제외)	정책지원관별 담당 의원 수
1	광진구의회	14	7	2.0
	성북구의회	22	11	2.0
	강북구의회	14	7	2.0
	도봉구의회	14	7	2.0
	구로구의회	16	8	2.0
	금천구의회	10	5	2.0
	서초구의회	16	8	2.0
	송파구의회	26	13	2.0
9	강남구의회	23	11	2.1
	노원구의회	21	10	2.1
	은평구의회	19	9	2.1
	중랑구의회	17	8	2.1
	영등포구의회	17	8	2.1
	동작구의회	17	8	2.1
	서대문구의회	15	7	2.1
16	종로구의회	11	5	2.2
	관악구의회	22	10	2.2
18	중구의회	9	4	2.3
	양천구의회	18	8	2.3
	강동구의회	18	8	2.3
21	동대문구의회	19	8	2.4
22	용산구의회	13	5	2.6
23	강서구의회	20	7	2.9
24	마포구의회	19	4	4.8
25	성동구의회	14	2	7.0

(자료: 서울특별시 각 지방의회 홈페이지, 2023.11.15. 기준)

3) 인사 운영 현황

(1) 지방의회의 부분적 인사권 독립

□ 사무직원의 임명, 교육, 훈련 등에 의장 권한 부여

-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이후 「지방자치법」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에 의거 지방의회 의장은 의회 사무직원을 감독하고 관련 법령 및 조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직원의 임명, 교육, 훈련, 복무,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음
-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등 규정에 따라 의장을 임용권자로 한 인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의 교육 훈련을 위한 시책 수립 및 시행, 교육 훈련 계획 등을 수립할 수 있음
-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치단체 정원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 집행기관장의 고려에 따라 변동 여지가 있는 것과 달리 의장의 권한은 사무처장 및 하부조직만을 규정하여 보좌기구 등에 대한 명확한 권한이 없는 실정임

(2) 정책지원관 채용 현황

□ 정책지원관 채용 시 최초 임기는 1~2년

- 정책지원관 임용 근거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거 정책 결정의 보좌 업무나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 및 기술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규정함

[표 27] 지방공무원 임용령 중 일반임기제 공무원 관련 조항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임기제공무원의 종류) 임기제공무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임기제공무원: 예산 및 일반직공무원의 정원 범위에서 임용되어 상근하는 임기제공무원 1의2. 전문임기제공무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임용되어 상근하는 임기제공무원 가. 정책결정의 보좌업무 나.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는 업무

-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전문인력으로 지방의회 및 공직사회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임용 과정에서 이들의 전문성을 담보할 만한 경력 요건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요구됨
- 현재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들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에 의거 정책지원관을 임기제 7급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있고, 대부분의 의회가 업무 성과에 따라 5년 범위 이내에서 채용 기간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음
- 채용 시 최초 임기는 지방의회마다 차이가 있는데 각 자치구의회의 채용 공고문을 확인한 결과 업무실적에 따라 최대 5년까지 임기가 연장 가능하다고는 하나 최초 임기가 최대 2년으로 짧고 불안정한 상황임
- 서울특별시 내 대부분의 자치구의회는 정책지원관 채용 시 공고에서

최초 임기를 1년으로 설정하고 있음

-반면 용산구의회, 중구의회, 중랑구의회, 강북구의회, 구로구의회, 동작구의회는 정책지원관의 최초 임기를 2년으로 설정함

○ 서대문구의회의 경우 정책지원관 최초 채용 시 근무기간을 1~2년으로 하고 있는데 업무 성과가 탁월한 경우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하며 이후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추가로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음

○ 타 자치구의회와 비교하여 서대문구의회 정책지원관의 임기는 최대 10년까지로 상당히 긴 편이지만, 최초 임기 자체는 1~2년으로 짧은 편임

○ 이처럼 임기제 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근무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특성상 신분이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이는 문제가 있음

□ 정책지원관 채용 기준은 대체로 유사하나 경력인정 범위 및 학력 기준에 조금씩 차이가 있음

○ 정책지원관 업무 특성상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만큼 자치구의회는 정책지원관 채용 시 이들의 학위, 유사 경력 등을 자격요건으로 규정하여 전문성을 지닌 우수한 인력 유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원활한 업무수행 능력을 위해 경력직으로만 채용하고 있는데 서울특별시 내 자치구의회 정책지원관 임기제 7급 공무원의 채용 기준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 서울특별시 내 대부분의 자치구의회 정책지원관 응시 자격은 대체로 유사함

[표 28]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 정책지원관 응시 자격

○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관련분야: 국가, 국회,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연구소, 대학교 등에서 행정, 법무, 입법, 회계, 감사, 조사, 연구 관련 실무 경력자

○ 관련분야 경력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자치구의회가 경력인정 범위를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영등포구의회는 추가 조항으로 관련 학위취득 과정을 실무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음

[표 2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정책지원관 경력인정 범위

- 국회, 지방의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서 지정된 공공기관, 연구소 등에서 관련분야 연구·조사·분석·입법지원 등의 실무경력자
-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지방공무원 임용령」제17조제5항)
- ※ 학위취득 과정은 관련 경력의 실무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 관련분야: 국가, 국회,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연구소, 대학교 등에서 행정, 법무, 입법, 회계, 감사, 조사, 연구 관련 실무 경력자

○ 또한 관련분야 전공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자치구의회는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을 요구하고 있는데 송파구의회는 학사학위의 해당 전공을 세 분야로 나누어 명확하게 기재하고 있음

-행정교육: 행정, 세무, 경영, 법률, 교육, 관광, 문화재, 문헌정보, 박물관 관련 등

-재정복지: 경제, 세무, 회계,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보건 등

-도시건설: 도시행정, 도시계획, 환경, 녹지, 건축, 토목 등

○ 관악구의회는 정책지원관 채용 우대요건으로 아래의 사항을 명시함

-정책지원관 근무 경력(3개월 이상)이 있는 자

-컴퓨터 활용 능력, 워드 프로세서, 사무자동화 자격증 등 보유

4) 한계

□ 인력구성, 조직개편 및 확대에 대한 의회의 자율권 부재

- 지방의회 인력은 의원의 의정활동에 직·간접적인 보좌를 하기 때문에 의회 사무기구의 역량은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질적 수준을 결정하는 비서기구이자 지방자치의 확고히 뿌리 내릴 수 있는 중요한 토대라고 볼 수 있음(김건위 외, 2021)
- 그러나 사무기구의 자체 조직권 및 예산권 등의 권한이 여전히 단체장에게 부여되어 있어 단체장 협조 없이 의회가 자체적으로 조직을 개편하거나 확대하는 등 자율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실정임
- 또한 지방의회 내 집행부 소속 파견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 권한이 의장에게 없어서 파견직원의 복귀 및 철수 등에 의장이 관여하지 못하는 등 원활한 인사 운영에 제한을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마포구의 경우 최근 구청장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일반 행정직 파견직 공무원들의 업무 복귀 등으로 인해 의회와 집행부 간 마찰을 빚은 사례가 있음
- 지방의회가 수행하는 역할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입법 지원 역량, 예·결산 지원 역량, 행정감사 및 행정조사 등 집행기관 감시 역량이 강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관련 조례 등 제도로의 연계가 꼭 필요함
- 특히 정책지원관을 비롯하여 의회 전문인력의 특성 및 현실에 맞는 지휘·명령체계를 구축하고 성과평가를 위한 법령 및 조례상의 명확한 근거가 필요함

□ 인사위원회 설치·구성에서 의원 배제

- 정책지원관은 지방의회 의원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보좌 인력으로 개별 자치구의회 관련 규정에 따라 담당 의원, ,사무처장, 전문위원 등의 지휘에 놓여있음
- 이에 정책지원관의 근무 실적 평가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 반영은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볼 수 있으나 현재 정책지원관 실적 평가에 대해 의원들은 의견을 개진하기 어려운 상황임
-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원은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음

[표 30] 지방공무원법 내 인사위원회 설치 관련 조항

제7조(인사위원회의 설치) (중략)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개정 2012. 3. 21.>

1.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3. 지방의회 의원

- 관악구의회의 경우 「서울특별시 관악구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개별 정책지원관의 지휘위원을 지정하고, 근무실적 평가 시 지휘위원의 평가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서대문구의회에서도 이를 참고하여 반영할 수 있음

[표 31]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정책지원관 배치 및 평가 관련 조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지휘위원의 지정) 사무국장은 각 정책지원관의 지휘위원을 지정한다.
제4조(근무실적 평가) 사무국장은 각 정책지원관 지휘위원의 평가를 반영하여 매년 정책지원관 근무실적 평가를 실시한다.

□ 정책지원 전문인력 관련 자치법규 부재

-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사권이 독립되면서 의장이 임용권을 가지게 되었으나 임용시험 문제, 승진, 인사 교류, 성과평가, 교육훈련 등 의회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들이 남아있음
- 정책지원관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제41조에 따라 도입된 인력으로, 시·도의 경우 6급 이하, 시·군·구의 경우 7급 이하의 지방공무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임기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만 임명할 수 있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6항)
- 그러나 정책지원관이 도입된 지 2년 가까이 지났음에도 구체적인 운영 방안 부재³⁾로 인사권 독립에 대한 체감이 어려움
 - 정책지원관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기인 2022년 1월 도입되었으나 의원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만 운영 가능하며, 배치·복무에 관한 사항 운영 방안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많은 지방의회가 어려움을 겪음
 -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의원 정수의 4분의 1 범위, 202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연차적으로 도입하는 과정에 있음
- 「지방자치법」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정책지원관 전문인력의 직무 등) 시행에 따라 지방의회는 정책지원관 운영 관련 조례를 제정할 수 있지만 현재 서울특별시 내 25개 자치구의회 중 정책지원관 운영에 대한 조례가 제정된 의회는 세 곳에 불과함
- 서대문구의회는 정책지원관 운영 관련 조례가 제정된 서울특별시의회 및 관악구의회, 양천구의회, 강북구의회를 참고하여 서대문구의회에 상황에 맞는 정책지원관 운영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음

3) 주희진(2023),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의 쟁점과 개선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의정브리프 vol 29.

□ 정책지원 전문인력 업무 불명확

- 정책지원관에 대한 지방의회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 부재로 효율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등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위에서 언급한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해서 상당 부분 해결 가능한 부분임
- 다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이 단기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정책지원관이 정책지원관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의원 보좌에 매진할 수 있도록 명확한 업무 분장이 우선되어야 할 것임
-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 대부분이 사무분장 규칙 등을 통해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를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자치구의회마다 정책지원관의 부서 배치에 차이가 있고 평가자 또한 상이하여 개별 정책지원관 별로 담당하는 업무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상황임
-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의회의 정책지원관 채용공고를 통해 정책지원관 담당 업무를 살펴보면 큰 틀에서 거의 유사한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표 32]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 정책지원관 주요 업무 내용(채용공고 기준)

-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 구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 은평구의회의 경우 정책지원관의 주요 업무는 위의 내용과 같지만 ‘기타 부서장이 지시하는 사항 등’을 추가로 명시하고 있음

-[은평구의회 임기제공무원(정책지원관) 임용시험 공고(서울특별시 은

평구의회 인사위원회 공고 제2022-14호)]를 살펴보면 의원의 의정 활동 관련 자료 작성,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조사 연구 외에도 ‘기타 부서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있음

- 이러한 경우 부서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예측하기 어려워 정책지원관의 업무가 지나치게 광범위해지거나 모호해질 수 있음
- 종로구의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사무국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제5조 2항에서 정책지원관 담당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타 자치구의회와 조금 차이가 있음
- 종로구의회 정책지원관의 사무분장 내용은 주민 의견수렴 및 민원 처리, 홈페이지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한 주민 소통 지원, 구정 질문서 및 5분 자유발언 문서 작성에 이르기까지 타 의회에 비해 그 범위가 넓고 구체적임

[표 33]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책지원관 사무분장 내용

-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사무국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및 채용 공고문
- ②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에 따른 정책지원관의 직무범위는 다음과 같고
1. 법령이 규정하는 의원의 각종 의정활동(이하 "의정활동"이라 한다)에 필요한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와 그에 수반되는 실무 지원
 2.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취합·분석 지원 및 서류 작성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구정 질문서 및 5분 자유발언 등의 문서 작성
 5. 의회 또는 의원이 개최하는 공청회·세미나·토론회·간담회 등 지원
 6. 의정활동 성과 및 실적 통계 관리
 7. 주민 의견수렴 또는 민원 처리에 대한 관리
 8. 홈페이지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 등을 활용한 주민소통 지원
-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직무활동에 대해서는 의원의 지시를 따르되, 그 밖의 일반적인 사무 및 복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이 관리·감독한다.

- 정책지원관의 업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부당한 업무지시에 놓일 여지가 있어 정책지원관 업무 분장 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불필요한 부분은 과감하게 삭제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경기도의회는 [2023년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일반임기제 6급) 임용시험 공고(인사위원회 공고 제2023-15호)](2023.3.24.)에서 정책지원관의 담당 업무를 규정함에 있어 ‘기타 의원 의정활동을 위한 일반 행정지원’을 추가로 명시한 바 있음
 - 이에 일부 도의원들이 지역구 민원 해결에 정책지원관을 동원하거나 의원 표창장 발급 업무를 지시하는 등 정책지원관을 개인 보좌관처럼 활용하는 문제가 지적되기도 함⁴⁾
 - 또한 정책지원관이 상임위원회에 배치되었으나 상임위원회별로 운영 방식이 달라서 정책지원관 별 업무 범위나 정도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우려도 제기됨

4) [사실]정책지원관은 도의원 비서가 아니다, 경기일보(2023.8.11.)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30810580321>

4. 서대문구의회 사무기구 운영 방향

1) 법령 개선 과제

□ 지방의회 의장의 사무기구 관리 권한 확대

- 현행 개방형 직위 운영에 따른 직급 기준 특례, 임기제 공무원 제도 운영 관련 특례 관련 조항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장의 권한 없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만 임명권이 있어 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함

[표 34] 개방형 직위 및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임명권 관련 규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1조(개방형직위운영에 따른 직급기준의 특례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에 따른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실 국장과 과장 담당관 등 보조 보좌기관의 직위와 소속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 보좌기관의 직위는 이 영에서 규정된 직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31조의2(전문임기제공무원제도 운영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책결정 또는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는 담당관 직위의 경우 이 영에서 규정된 직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 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이하 “전문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생략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담당관 직위를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려는 경우로서 그 담당관 직위의 직급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담당관의 직위 및 직무, 임용 예정인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상당계급 등에 대하여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구 및 정원관리 목표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현재는 그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만 있어 지방의회 의장에게도 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장’으로 개정

[표 35]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정원관리에 대한 권한 관련 규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기구와 정원의 관리목표) ① <u>지방자치단체의 장</u>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이하 “기구”라 한다)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을 관리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5조(기구의 설치시 고려사항) ① <u>지방자치단체의 장</u>이 기구를 설치하거나 개편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 지방의회 예산편성권 독립

- 지방의회 의장의 인사권을 강화하고 보장하기 위해서는 집행 기구와 지방의회의 기준인건비 분리 등 예산편성권이 독립되어야 함
-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와 인건비 등을 고려한 기준인건비를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만 통보하고 있어 지방의회의 의장에게는 권한이 없는 실정임

[표 36] 지방의회의 예산편성권 관련 규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기준인건비제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매년 기준인건비를 산정하고 전년도 12월 31일까지 <u>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u>
--

- 향후 지방의회에 예산 자체 편성권이 부여된다면 의회 사무국 조직 구성 및 인사 개편에 있어 자율성이 보다 확보되고 장기적으로 사무직원 정수 및 직급체계,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 등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는데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임

2) 업무 관련

□ 적극적인 의정 보좌역량 강화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정책지원 인력이 새롭게 증원된 만큼 정책지원관이 자신의 역량과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기반 조성 필요함
- 서대문구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게 지방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 및 감시, 원활한 정책집행이 가능하도록 조직진단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서대문구의회 정책지원관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의원정수 1/2 범위에 근접하게 운영되고 있어 더 이상의 인력 충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정책지원관을 포함하여 현재 의회 사무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각자 담당하고 있는 고유 업무 및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전문위원과 정책지원관들이 의정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보좌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함
- 서대문구의회는 의회의 법률적 권한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의원에 대한 전문적인 의정 보좌 체계 마련, 집행부 견제 등의 임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의정보좌 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정책지원관 관련 자치법규 입법 등

- 지방의회 사무기구 기능 강화 및 의정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책지원관 채용 방식과 업무 내용, 사무국 배치 등 업무 지속성 유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 서대문구의회는 현재 한 명의 정책지원관이 두 명의 의원을 보좌하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음
- 정책지원관을 상임위원회가 아닌 개별 의원을 중심으로 배치할 때 유의할 점은 한 명의 정책지원관이 담당하는 의원의 소속 정당 등에

따라 정책지원관의 업무 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임

- 의원의 소속 정당이 다를 경우 정책지원관이 제공하는 동일 자료에 대한 의원의 해석이 상이하거나 관련 요구가 다를 수도 있음
- 또한 정책지원관이 보좌하는 의원들의 상임위가 다를 경우 업무 강도가 달라지거나 동시에 업무를 요청받았을 때 우선순위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여지도 있으며 정책지원관이 맡은 상임위마다 혹은 의원에 따라 업무요청 양과 강도가 다를 수 있음
-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지원관의 의정 보좌역량을 강화하고 안정적으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관 운영에 관련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정책지원관의 구체적인 사무를 조례에 명시할 수 있기 때문에 서대문구의회는 관련 조례 제정 등을 통하여 전문위원과 정책지원관의 업무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중복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할 수 있을 것임
- 특히 조례를 구성함에 있어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사항들을 적시하여 정책지원관이 의원 개인의 비서화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 정책지원관 교육훈련, 전공 분야 등 관련 규정 마련

- 정책지원관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인재인 만큼 지방의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및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체계와 전담 기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정책지원관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규정은 타 자치단체 사례를 참고할 수 있는데 지방의회 중 「정책지원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정책지원관 교육 훈련에 대한 조항을 규정한 곳은 모두 12곳임
- 강원 원주, 인천 남동구, 인천 동구, 경기 성남, 경기 가평, 경남 창원, 경

남 진주, 경남 김해, 서울 양천, 부산 해운대, 대구 수성, 광주 북구

[표 37]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책지원관 교육훈련 관련 규정

「남동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교육훈련) ① 관리부서는 정책지원관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는 정책지원관의 교육훈련 참석실적을 근무실적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 광주 북구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정책지원관의 담당 상임위원회를 의회 사무국장이 지정하고 그 과정에서 정책지원관의 실무경력 및 전공 분야 등을 고려하여 배정하도록 하고 있음

[표 38] 광주광역시회의의 정책지원관 배치 관련 규정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담당 상임위원회 지정) ①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은 의원의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관별로 담당 상임위원회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책지원관의 담당 상임위원회를 지정할 때에는 실무경력 및 전공분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국장은 정책지원관의 담당 업무 및 근무환경에 대한 적응도, 다양한 업무경험 습득의 필요성 등을 위하여 담당 상임위원회를 순환 지정할 수 있다.

3) 인사 운영 관련

□ 의회 사무국 인력 운영계획 수립

- 지방의회는 의장에게 부여된 임용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 인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사무기구 내 소속 공무원의 승진 및 채용과 관련된 인사운영계획을 수립하는 등 중장기적인 인력운영계획을 수립·진행해야 함
- 현재는 지방의회 특성상 별정직/임기제 공무원 정원이 한정되어 있어 의회 사무국 직원 채용에 대한 우선순위를 사전에 계획하는 방안 등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중장기적으로는 지방의회 독립 인건비 도입, 의장의 사무기구 인사관리 권한 확대 등과 관련된 상위법령 차원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 인사 운영 관련 자치법규 제·개정 검토

-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관한 법령으로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이 개정되었고, 대통령령의 지방공무원 임용령, 보수 규정 등 개정이 이루어졌음
-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사권 독립에서 중요한 사무기구 정원 및 조직구성, 예산편성권 등의 권한이 의회에 없어서 의회가 집행부와 완전히 독립된 방식으로 인사권을 집행하기 어려운 실정임
- 서대문구의회는 경우 세부적인 직원 정수 등에 대해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르게 되어 있어 의회에서 사무국 직원의 직급별 정원 등 실질적인 인사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4조(인사위원

회의 설치)에 의거 서대문구의회가 인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나 「지방공무원법」 제7조 6항에 따라 실제 정책지원관을 지휘·담당하는 의원이 인사위원회에 위촉될 수 없어 정책지원관 평가에 대한 의원의 권한이 없는 실정임

- 서대문구의회는 정책지원관 채용 시 최초 근무 기간을 1~2년으로 하는 반면 업무 성과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어 업무평가 결과가 정책지원관 근무연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임
- 이에 정책지원관 업무 평가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정책지원관 업무 평가에 지휘·담당 의원의 의견 반영

-정책지원관 교육 훈련 이수 실적 등 평가에 반영 등

Ⅳ. 서대문구의회 맞춤형 대응 전략

1. 서대문구의회 정책지원 역량 강화 관련 조사·분석

1) 조사 개요

□ 서대문구 의원, 정책지원관 대상 설문 및 인터뷰 진행

○ 서대문구의회 의원 15명 중 10명이 설문 및 인터뷰에 참여함

-설문조사는 11월 14일부터 17일까지 5일 동안 진행(10명)

-의원에 대한 추가 인터뷰는 11월 28일에 진행(2명)

○ 서대문구의회 정책지원관 7명 중 6명이 설문 및 인터뷰에 참여함

-설문조사는 11월 14일부터 24일까지 9일 동안 진행(6명)

-추가 인터뷰는 정책지원관 대상 설문 결과를 토대로 진행(2명)

2) 조사·분석 결과

(1) 의원 대상 조사·분석

□ 설문조사

○ 설문 항목의 응답 결과는 대체로 질문 내용에 대해 매우 강하게 부동의하거나, 빈도나 인원의 수를 묻는 질문에 가장 수치를 낮게 대답한 결과에는 1점 부여하는 것으로 시작해 ‘보통’ 답변에는 3점, 가장 긍정적이거나 수치를 높게 대답한 답변에 5점을 부여하고 답변자들의 점수에 평균값을 구해 해당 질문에 대한 동의의 수준을 파악함

질문 1. 현재 정책지원관 보좌 및 의정활동 지원에 만족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총합
응답	6	3	1			10
백분율	60%	30%	10%			100%
동의/ 부동의	90%		10%	0%		
평균 : 4.5						

질문 1-1. 만족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해당 지원관이 일 처리가 좋음
- 자료 요구, 공무원 약속 잡기, 할 일 체크 등 기본적인 업무에 들어가는 시간이 매우 절약됨
- 다양한 자료를 검색 요구 시 도움이 됨
- 정책보좌 및 자료 수집 지원
- 적극적으로 정책 개선 및 지원을 해줌
-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는 게 많음
- 전문성 결여 보완
- 자료 준비 및 민원 해결에 있어 시간이 절약되고 내용 정리가 잘 되어 도움이 많이 됨

질문 2. 현재 정책지원관의 수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총합
응답	1	1	2	3	3	10
백분율	10%	10%	20%	30%	30%	100%
동의/ 부동의	20%		20%	60%		
평균 : 2.4						

질문 2-1. 걱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최소한 구의원 1인에 1명은 돼야지요. 2명이면 얼마나 좋을까. 1명은 정책, 1명은 실무
- 1인 1명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 현실적으로 의회 반영(가능) 안 되며 2인 의원 정책지원 힘들
- 업무량과 심도 있는 정책지원을 위해서는 1 의원 1 지원관 필요
- 의원 업무의 중복성으로 인한 활용성 결여
- 2:1 배치는 한쪽으로 치우칠 경우가 있음
- 최소 의원 1명당 1명의 지원관이 있어야 한다고 봄

질문 3. 평소 의정활동 지원 등의 업무에 정책지원관을 어느 정도로 활용하십니까?

	거의 매일 활용함	자주 활용 하는 편	보통	조금 활용함	거의 활용 안 함	총합
응답	2	5	3			10
백분율	20%	50%	30%			100%
동의/ 부동의	70%		30%	0%		
평균 : 3.9						

질문 3-1. 정책지원관을 활용한다면 주로 어떤 업무에 활용하십니까?

- 자료 요구, 사전 자료 서치
- 자료 요구서 제출, 스케줄 체크 등
- 자료 검색, 조례 제정, 타 구와의 분석
- 자료 수집 및 정책 토의
- 조례, 구정 질문 초안, 기타
- 정책 개선, 조례 제·개정, 언론보도
- 찾고자 하는 자료, 잘 모르는 자료를 찾아줘 도움이 됨
- 소관 상임위 업무 활동 보조(자문) 역할 수행
- 조례, 민원 자료
- 자료 준비 및 민원 해결

질문 3-2. 정책지원관을 활용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자료 정도는 혼자서도 잘 찾고, 질의 방향도 의원 본인이 잘 해내야 한다는 지론 때문
- 2명의 의원을 담당하고 있기에 가급적 내 일은 내가, 일을 덜 주려고 함

질문 4. 현재 서대문구의 정책지원관 배치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총합
응답	1	3	3	2	1	10
백분율	10%	30%	30%	20%	10%	100%
동의/ 부동의	40%		30%	30%		
평균 : 3.1						

질문 4-1. 불만족하는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복수 응답)

내용	응답
별도 정책지원팀으로 배치되어 있는 것이 적절치 않음	2
담당하고 있는 의원과 정책지원관 2:1 매치 방식이 적절치 않음	5
개별 정책지원관의 업무 분장 및 업무 강도에 차이가 있음	4
기타	

질문 4-2. '4-1'에 응답한 경우 자세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 분명 정책지원관마다 역량 차이가 있을 것이기에 역량이 낮은 지원관을 배정 받은 경우 문제가 발생할 것. 이는 현재와 같이 의원 2 대비 지원관 1 체제이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봄
- 1인 1명이 답. 정책지원관은 사무국으로부터 좀 더 독립적일 필요가 있음. 특히 아직 사무국 인사권 독립이 이뤄지지 않아 더욱 독립활동이 필요함
- 상임위별로 배치되길 원함. 업무의 효율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 2:1 매치 시 중복성으로 인한 전문성 결여(신속 응대 결여)
- 의원의 역량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고 생각함
- 1인 1보좌관 적극 필요

질문 5. 서대문구의회 사무분장 규칙에 따른 정책지원관 사무분장 관련

서대문구의회 사무분장 규칙에 따른 정책지원관의 사무
1. 조례 제정·개정 및 폐지,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 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3. 행정사무감사·조사 지원 4. 의원의 구정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의원연구단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 활동 지원

질문 5-1. 의회 사무분장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정책지원관의 사무분장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총합
응답	2	5	3			10
백분율	20%	50%	30%			100%
동의/ 부동의	70%		30%	0%		
평균 : 3.9						

질문 5-2. (5-1)의 질문 중 정책지원관의 사무분장이 적정하지 않다고 답한 경우, 사무분장 규칙에서 빠져야 하는 사무 및 추가되어야 할 사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복수 응답)

- 4번 정도는 기존 사무국에서 해도 된다고 봄. 이외에 의원들의 의정홍보활동(블로그, 페이스북 등)에 도움 되는 활동(예를 들어 동영상 편집 등)을 잘 해줬으면 좋겠음 - 의원의 홍보 영상 업로드, SNS 지원 필요
--

질문 6 서대문구의회 사무분장 규칙에 따른 정책지원관 사무 외에 다른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업무 혹은 의원과 관련된 업무들을 기준 없이 나열한 것입니다. 정책지원관의 업무로 반드시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업무와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업무를 구분해 주세요. (복수 응답)

	반드시 수행	절대 불가	모르 겠음
의정활동 성과 및 실적 통계 관리	6	4	
의원의 민원 관련 자료의 수집 조사·분석 등 지원	9	1	
주민 여론조사	1	3	5
민원 처리에 대한 관리	6	2	1
의원 홈페이지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활용한 주민소통 지원	7	2	1
의원외교·공무국의 활동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분석 및 연구 등 지원	8		2
의원정책개발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분석 및 연구 등 지원	10		
의원 의정활동 보도자료 등 언론 관련 자료 작성·수집·분석 및 지원	8	1	1

질문 6-1. 정책지원관의 업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문항이 있다면 해당 문항 및 관련 업무를 누가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 민원이라는 게 해결하는 방식에 따라 지원관의 역할이 가능 또는 불가능한 범주가 있음. 의원이 받은 민원이라 하여 지원관이 다 담당해선 안 됨. 또한 의원의 의정 활동은 실적이나 통계로 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 ‘해석의 영역’ 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정치 중립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봄. 주민 여론조사 역시 구의원 본인이 사비를 들여서 진행할 일이기에 지원관 업무고 부적절함
- sns나 개인 홈페이지 운영 역시 구의원 본인의 관리에 두어야 함
- 의정활동 성과평가는 사무국이 담당해야 함
- 의원 연구단체가 많지 않다면, 전문적으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므로 특정인이 맡았으면 하는 바람
- 보도자료 등 언론 관련 자료 작성·수집·분석은 홍보팀에서 해야 함
- 주민 여론조사 및 소셜네트워크 등을 활용한 주민 소통 지원: 의원 본인
- 주민여론조사는 구의회 직원이 해야 함

질문 6-2. ‘6, 7번 사무분장표’ 외에도 정책지원관의 업무로 더 추가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지금 더 요구하면 노동착취다. 기존 업무만이라도 잘하면 매우 훌륭하다.
- 민원 처리
- 의원 수행

질문 7. 향후 서대문구에 “정책지원관 운영·관리에 대한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	그렇지 않다	잘 모르겠다	총합
응답	6	2	2	10
백분율	60%	20%	20%	100%

질문 7-1. 정책지원관 관련 조례가 필요하다고 답한 경우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 응답)

내용	응답
정책지원관 업무 관련 규정	7
정책지원관 채용 관련 규정	4
정책지원관 배치 관련 규정	1
정책지원관 평가 관련 규정	4
정책지원관 교육훈련 관련 규정	2
기타	1

※ 기타: 지위 보장, 업무 보장, 신분 보장 등 권리와 이를 지켜야 할 구의회와 의무

질문 7-2. 정책지원관 관련 조례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상위법에 위임된 사안이 아님
- 선도적으로 잘 만들 필요가 있음
- 사무분장 규칙이 있음에도 조례가 필요한지에 관해 논의와 검토가 필요함

질문 8. 정책지원관의 근무 실적 및 업무 평가는 누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복수)

내용	응답
의회 사무국장 및 팀장	3
의장 및 담당 의원	7
기타	1

※ 기타: 기본적으로 의장과 담당 의원이 하고, 정량적 평가가 가능한 근무를 중심으로 사무국장
이 일부 할 수 있다고 생각함

질문 9. 정책지원관에게 필요한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용	응답
상임위 전문성	4
입법 전문성	3
정무적 능력	5
기타	1

※ 기타: 다소 포괄적인 정책수행 능력에 홍보역량 필수

질문 10. 향후 정책지원관 운영 관련 제도개선 방안으로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수 응답)

내용	응답
의원 1인당 1명의 정책지원관 확보(현행 공무원 신분)	6
의원 1인당 1명의 보좌관 채용(국회의원 보좌관처럼 별정직으로 의원이 직접 채용)	6
정책지원관 채용 요건 완화 및 채용 절차 간소화	1
정책지원관 채용 요건 강화(석·박사 학위 요건 추가 등)	1
의원이 직접 지휘·감독 등 근무평정에 의원의 평가 포함	4
정책지원관의 업무 범위 자율화 및 직급체계 상향·자율화	2
기타	

질문 11. 기타 서대문구의회 사무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나 개선되어야 할 부분을 자유롭게 말씀해 주세요.

- 의회 사무국 독립, 사무국장은 반드시 외부 전문가 임기제로 뽑아야 함
- 의회의 운영진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와 책임이 무엇보다 우선시하여 성실하게 임할 수 있는 직업 윤리관이 요구됨
- 현재는 만족스러움
- 사무국과 의원들의 잦은 소통
- 정책지원관 팀 내 행정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직원이 필요함

□ 조사 결과

- 정책지원관 보좌 및 의정활동 지원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의원의 90%가 만족(매우 만족 60%, 만족 30%), 10%가 보통이라고 응답하여 정책지원관 지원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남
 - 만족하는 이유로는 지원관의 정책보좌 및 관련 자료 수집·지원, 기본적인 업무 체크 및 지원 등 업무 효율성을 높여준다는 답이 주를 이루었음
 - 불만족하는 이유로는 깊이 있는 정책 발굴 등의 능력 보완 필요, 의원 개별 홍보에 활용 가능한 실무 능력 부족 등을 꼽음
- 정책지원관 수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설문에 참여한 의원의 60%가 부동의(그렇지 않다 30%, 매우 그렇지 않다 30%) 하여 정책지원관 수에 불만족하는 비율이 만족하는 비율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남
 - 동의 20%(매우 그렇다 10%, 그렇다 10%), 보통이다 20%로 나타남
 -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로 대부분의 의원들은 의원과 정책지원관의 2:1 배치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는데 2:1 배치 시 의원 업무 중복성으로 인한 활용성 결여, 특정 의원 한쪽으로 치우칠 우려, 심도 있는 정책지원의 어려움 등을 근거로 제시하였음
- 평소 의정활동 지원 등 업무에 정책지원관을 얼마나 많이 활용하는지

묻는 질문에 의원의 70%가 자주 활용(거의 매일 활용함 20%, 자주 활용하는 편 50%) 한다고 답하였음

- 주로 활용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자료 검색 및 수집, 조례 제·개정 관련 언론보도, 상임위 활동 자문, 민원 자료 등이라고 응답함

- 반면 정책지원관을 활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의원 본인의 업무역량이 충분하거나 정책지원관의 일을 덜어주기 위함 등의 의견이 있었음

○ 현재 서대문구 정책지원관 배치에 대한 만족도는 동의 40%, 보통 30%, 부동의 30%로 동의 비율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남

- 매우 만족 10%, 만족 30%, 보통 30%, 불만족 20%, 매우 불만족 10%

- 불만족하는 이유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응답은 “담당하고 있는 의원과 정책지원관 2:1 매치 방식이 적정하지 않음”이 차지했고, 그 뒤로 “개별 정책지원관의 업무 분장 및 업무 강도에 차이가 있음”, “별도 정책지원팀으로 배치되어 있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의 순서로 나타났음

- 구체적으로 의원 1명 당 정책지원관을 1명으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 별도 정책지원팀 배치보다 상임위별로 배치하여 업무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 서대문구의회 사무분장 규칙에 규정된 정책지원관 사무에 대해 의원의 70%가 적정하다고 답하였고, 30%는 보통이라고 응답하여 사무분장 자체에 대한 적정성에 대부분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남

○ 향후 서대문구 “정책지원관 운영·관리에 대한 조례”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체의 과반이 넘는 60%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 그렇다 60%, 그렇지 않다 20%, 잘 모르겠다 20%로 나타남

- 정책지원관 조례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으로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한 부분은 정책지원관 업무 관련 규정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정책지원관 채용과 평가가 높게 나타남. 그 외에도 교육훈련 관련, 배치 관련

- 규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뒤를 이음
- 기타 의견으로는 정책지원관의 지위 및 신분 보장 등의 권리와 구의회의 의무 등에 대한 내용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있었음
 - 정책지원관 관련 조례가 필요 없다는 응답으로는 사무분장 규칙이 있음에도 조례가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 정책지원관 근무 실적 및 평가 주체에 대해서 10명 중 7명의 의원이 “의장 및 담당 의원”이라고 응답하였고, 3명은 “의회 사무국장 및 팀장”이라고 응답하였음
 - 정책지원관에게 가장 필요한 역량으로 정무적 능력, 상임위 전문성, 입법 전문성, 기타(정책수행 능력에 홍보역량 필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정책지원관 운영 제도개선 방안으로는 “현행 공무원 신분의 의원 1인당 1명의 정책지원관 확보” 6명, “의원이 직접 채용하는 별정직으로 의원 1인당 1명의 보좌관 채용”이 6명으로 동일하게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 “근무평정에 의원의 평가 포함”이 4명, “정책지원관 업무 범위 자율화 및 직급체계 상향자율화” 2명이 그 뒤를 이음
 - 마지막으로 서대문구 사무국에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 사무국장을 외부 임기제 전문가로 뽑아야 한다는 의견, 사무국 직원과 의원들 간의 잦은 소통, 정책지원팀 내 행정 전문 인력 배치 등의 의견이 제시됨

(2) 정책지원관 대상 조사·분석

□ 설문조사

○ 설문 항목의 응답 결과는 대체로 질문 내용에 대해 매우 강하게 부동의하거나, 빈도나 인원의 수를 묻는 질문에 가장 수치를 낮게 대답한 결과에는 1점 부여하는 것으로 시작해 ‘보통’ 답변에는 3점, 가장 긍정적이거나 수치를 높게 대답한 답변에 5점을 부여하고 답변자들의 점수에 평균값을 구해 해당 질문에 대한 동의의 수준을 파악함

○ 본 설문에는 서대문구의회 정책지원관 7명 중 6명이 참여하였음

질문 1. 현재 정책지원관 업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총합
응답	1	3	2			6
백분율	16.7%	50%	33.3%			100%
동의/ 부동의	67.7%		33.3%	0%		
평균 : 3.8						

질문 1-1. 만족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업무이며, 성과가 비교적 가시적임
- 지역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주민을 만날 수 있고, 실생활에 나타나는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활동이라 보람이 커서
- 현재까지는 업무 난이도와 양이 적절한 편. 담당 의원이 바뀌어 업무 강도가 높아진다면 만족도가 달라질 수 있겠으나 현재까지는 만족
-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별로 없음

질문 1-2. 불만족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지원관 활용에 대해 의원님들 간의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아 의원님마다 지원관에게 요구하는 업무가 다르다는 느낌을 많이 받음
- 담당 의원님과 논의를 통해 업무에 대한 조정 및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은 가 능하나 지원관과의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도 문제라는 생각이 듦

질문 2. 현재 정책지원관의 수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총합
응답			4	1	1	6
백분율			66.6%	16.7%	16.7%	100%
동의/ 부동의			66.6%	33.4%		
평균 : 2.5						

질문 2-1.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한 명의 지원관이 지원해야 할 의원님 수가 2명이기에 힘들
- (의원 수/2)+1이 되어야 함. 여유 인력이 없어서 업무로드가 심한 지원관의 업 무 분담이 어려움. 혹은 팀에 행정을 전담으로 처리해 줄 일반직 공무원이 배 치되었으면 함

질문 3. 평소 맡고 있는 업무 범위 및 강도에 대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총합
응답		2	2	1	1	6
백분율		33.3%	33.3%	16.7%	16.7%	100%
동의/ 부동의	33.3%		33.3%	33.4%		
평균 : 2.8						

질문 3-1. 현재 주된 업무는 무엇입니까?

- 입법 지원, 민원 처리 지원 등
- 조례 제·개정, 지역사회 자원조사, 5분 자유발언/신상 발언/구정 질문 등 메시지 관리
- 자료 요구, 자료 수집 및 정리, 조례 관련 업무, 행정업무, 의원의 사소한 요구 사항 처리
- 의원 요구자료 조사, 의원 발언 원고 작성, 성안 지원
- 조례안 검토, 자료 작성, 발의 서류 준비, 5분 발언 및 구정 질의 작성, 임시회 및 정기회 상임위 질의서 작성, 행감 질의서 작성 등

질문 4. 현재 서대문구의회 의원 정책지원관 배치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총합
응답		3	2	1		6
백분율		50%	33.3%	16.7%		100%
동의/ 부동의	50%		33.3%	16.7%		
평균 : 3.3						

질문 4-1. 불만족하는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복수 응답)

내용	응답
별도 정책지원팀으로 배치되어 있는 것이 적절치 않음	1
담당하고 있는 의원과 정책지원관 2:1 매치 방식이 적절치 않음	
개별 정책지원관의 업무 분장 및 업무 강도에 차이가 있음	1
기타	

질문 5. 서대문구의회는 의원 2명에 1명의 정책지원관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두 의원이 동시에 업무를 요청했을 때 어떤 절차와 기준으로 업무 처리 순서를 정하십니까?

- 시급성을 고려하여 순서를 정하되, 동일한 시급성을 가진 업무인 경우에는 결과물의 질이 낮아지더라도 동시에 추진하여 동시에 마감함
- 다선의원을 우선하여 업무 처리하고, 본인이 작성할 수 있는 자료나 소관부서에서 5일 이내에 답변받을 수 있는 자료를 먼저 전달함
- 제출일 또는 마감일이 더 촉박한 순으로 업무를 처리함
- 업무의 마감일자를 확인하여 시급성을 요하는 업무부터 처리함. 만일 두 업무 모두 시급할 경우 동시 진행하여 함께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함
- 선입선출, 급한 거 먼저
- 집행부에서 관련 자료를 빨리 받을 수 있는 일부터 처리함

질문 6. 서대문구의회 사무분장 규칙에 따른 정책지원관 사무분장 관련

서대문구의회 사무분장 규칙에 따른 정책지원관의 사무
1. 조례 제정·개정 및 폐지,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 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3. 행정사무감사·조사 지원 4. 의원의 구정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의원연구단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질문 6-1. 정책지원관 채용 이후 위의 7가지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데 수행했거나 수행하고 있는 업무가 있습니까? 있다면 무엇인지 모두 나열해 주세요.

- 민원 처리 지원, 주간업무 현황 서식 제작 및 관리, 정책지원서비스 통계 분석 등
- 단체장 고발, 의원의 명예훼손으로 인한 민·형사소송 증거자료 준비, 주소록 정리 및 감사 문자 발송, 지역행사 의전 수행
- 인터뷰 자료 작성, 공무국외 출장 관련 업무 등

- 의원 민원처리 지원, 회식 및 술자리(과도한 음주) 참석, 정당활동 지원, 개인 부탁 처리 등
- 연구단체 운영·지원 시 계약 체결 및 단순 행정, 지출 관련된 업무는 행정팀이 하는 게 적절

질문 6-2. 의회 사무분장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정책지원관의 사무분장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총합
응답		5	1			6
백분율		83.3%	16.7%			100%
동의/ 부동의	83.3%		16.7%	0%		
평균 : 3.8						

질문 6-2-1. (6-2)의 질문 중 정책지원관의 사무분장이 적정하지 않다고 답한 경우, 사무분장 규칙에서 빠져야 하는 사무 및 추가되어야 할 사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복수 응답)

- 의원연구단체와 관련한 사항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듦. 해당 업무는 행정적 문서처리가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임
- 공청회, 세미나 관련 현수막 제작, 지출처리 등 서무 업무는 일반직 공무원이 하는게 맞다고 생각

질문 7. 서대문구의회 사무분장 규칙에 따른 정책지원관 사무 외에 다른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업무 혹은 의원과 관련된 업무들을 기준 없이 나열한 것입니다. 정책지원관의 업무로 반드시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업무와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업무를 구분해 주세요. (복수 응답)

	반드시 수행	절대 불가	모르 겠음
의정활동 성과 및 실적 통계 관리	1	1	4
의원의 민원 관련 자료의 수집 조사·분석 등 지원	5		1
주민 여론조사		3	3
민원 처리에 대한 관리	2		4
의원 홈페이지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활용한 주민소통 지원		6	
의원외교·공무국의 활동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분석 및 연구 등 지원	4		2
의원정책개발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분석 및 연구 등 지원	6		
의원 의정활동 보도자료 등 언론 관련 자료 작성·수집·분석 및 지원	3		3

질문 7-1. 정책지원관의 업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문항이 있다면 해당 문항 및 관련 업무를 누가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 주민 여론조사: 집행부서 또는 의회사무국 의정팀
- 주민 여론조사: 사무국 의정팀/ 홈페이지 관리: 의원 본인 및 홍보팀
- 의원 홈페이지 및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을 활용한 주민소통 지원: 의회사무국 홍보팀
- 의원 개인별 유튜브, 페이스북에 주 1회 이상 쏘츠, 메시지 관리를 원하나 공직선거법 위반될 우려가 있어서 홍보팀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의원이 직접 관리하는 것이 적절함
- 홈페이지나 sns는 의원이 스스로 해야 한다고 생각함. 민원이나 여론조사는 사안의 성격에 따라 정책지원관이 할 수도 있다고 봄
- 기존에 해당 업무를 추진하던 부서가 있었다면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함(과거 보도자료를 담당하던 홍보팀에서 업무를 지속적으로 담당하도록 하는게 맞음)
- 정책지원관 제도는 기존에 의회 사무국이 지원하지 못했던 것을 지원하기 위해 생긴 제도인데, 오히려 사무국을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듦

질문 7-2. ‘6, 7번 사무분장표’ 외에도 정책지원관의 업무로 더 추가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지역 내 입법 수요 조사

질문 8. 향후 서대문구에 “정책지원관 운영·관리에 대한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	그렇지 않다	잘 모르겠다	총합
응답	2	0	4	6
백분율	33.3%	0%	66.7%	100%

질문 8-1. 정책지원관 관련 조례가 필요하다고 답한 경우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 응답)

내용	응답
정책지원관 업무 관련 규정	3
정책지원관 채용 관련 규정	1
정책지원관 배치 관련 규정	2
정책지원관 평가 관련 규정	1
정책지원관 교육훈련 관련 규정	
기타	

질문 8-2. 정책지원관 관련 조례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의회 규칙 정도로도 충분함

질문 9. 정책지원관의 근무 실적 및 업무 평가는 누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복수)

내용	응답
의회 사무국장 및 팀장	4
의장 및 담당 의원	3
기타	2

※ 기타 답변

1. 정책지원관 상호 평가, 의회사무국장 및 팀장, 담당 의원
2. 담당 의원의 의견도 일부 반영되어야 함

질문 10. 정책지원관에게 필요한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용	응답
상임위 전문성	1
입법 전문성	3
정무적 능력	
기타	1

※ 기타 답변

1. 셋 중 하나는 필수, 두 개면 좋고 셋 다 갖추는 건 불가능함
2. 모두 다 필요함

질문 11. 향후 정책지원관 운영 관련 제도개선 방안으로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수 응답)

내용	응답
의원 1인당 1명의 정책지원관 확보(현행 공무원 신분)	4
의원 1인당 1명의 보좌관 채용(국회의원 보좌관처럼 별정직으로 의원이 직접 채용)	2
정책지원관 채용 요건 강화(석·박사 학위 요건 추가 등)	1
의원이 직접 지휘·감독 등 근무평정에 의원의 평가 포함	1
정책지원관의 업무 범위 자율화 및 직급체계 상향·자율화	
기타	

질문 12. 기타 서대문구의회 사무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나 개선되어야 할 부분을 자유롭게 말씀해 주세요.

- 조례 시행 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 사회조사 또는 주민평가
- 정책지원관이 영수증 처리 등 행정업무를 해야 하는 부분이 개선되었으면 함

□ 조사 결과

○ 설문에 응답한 서대문구 정책지원관 6명은 정책지원관 업무에 대해 3.8점의 만족도를 보였음

- 이 중 매우 만족은 16.7%, 만족 50%, 보통 33.3%로 나타나 업무에 대해 만족하는 비율이 전체의 67.7%를 차지하였음

- 업무에 만족하는 이유로는 정책지원관 업무의 특성상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고 성과가 가시적이며 지역의 다양한 주민을 만날 수 있어서 보람 있다는 응답과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있었음

- 다만 담당 의원이 바뀌거나 업무 난이도가 현재보다 높아질 경우 만족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응답도 있어, 담당 의원 및 업무 분장 변화에 따라 현재의 만족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응답이 있었음

- 같은 맥락에서 의원과 정책지원관 간, 혹은 의원 간, 정책지원관 간의 업무에 대한 합의점이 부재함으로 인해 의원마다 정책지원관에게 요구하는 업무에 차이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있었음

○ 정책지원관 수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보통이다 66.6%, 부동의 33.4%(그렇지 않다 16.7%, 매우 그렇지 않다 16.7%)로 나타나 동의 비율보다 부동의 비율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부동의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지원관 한 명이 담당해야 하는 의원의 수가 2명이기 때문에 오는 현실적인 어려움, 팀 내 행정 전담인력 부재로 인한 업무 가중 등이 원인으로 지적되었음

- 평소 업무 강도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그렇다 33.3%, 보통이다 33.3%, 그렇지 않다 16.7%, 매우 그렇지 않다 16.7%로 동의와 비동의의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남
- 현재 주된 업무는 조례 제·개정 등 입법 자료 지원, 자료 수집 및 정리, 의원 발언 원고 작성, 행정감사 질의서 작성 등 서대문구 사무분장 규칙에 따른 정책지원관 업무로 나타남
- 그 외 민원 처리에 대한 지원, 의원의 사소한 요구사항 처리 등의 답변도 소수 찾아볼 수 있었음
- 의회 사무분장 규칙에 규정된 사무분장 적정성에 대한 답으로는 동의 83.3%(그렇다 83.3%), 보통이다 16.7%로 나타나 규정 내 사무분장에 대해서는 대부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다만 사무분장에서 적절하지 않거나 빠져야 하는 사무에 대해서 의원 연구단체 관련 행정, 현수막 제작, 지출 및 서무 업무 등 행정적 문서처리 업무가 주를 이루어 정책지원팀 내 서무 업무를 담당할 추가 인력의 필요성이 언급되었음
- 서대문구 사무분장 규칙에 따른 정책지원관 사무분장 외에 수행했거나 수행하고 있는 업무, 혹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업무에 대한 질문의 답은 다음과 같음
- 민원 처리 지원, 정책 지원 서비스 통계 분석, 주간 업무 현황 서식 제작 및 관리, 민·형사 소송 자료 준비, 주소록 정리 및 문자 발송, 의전 수행, 인터뷰 자료 작성 등
- 정책지원관 배치에 대해서는 평균 만족도 3.3점에 동의 50%(그렇다 50%), 보통 33.3%, 부동의 16.7%(그렇지 않다 16.7%)로 만족하는 비율이 불만족하는 비율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남
- 그러나 개별 정책지원관의 업무분장 및 업무 강도에 따라 만족도가 다르게 나타나거나

- 장기적으로 정책지원팀으로 운영되는 것에 동의하지만 현재처럼 별도의 행정인력 없이 정책지원관 업무에 대한 조직 내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지원관과 의원이 2:1로 배치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업무 가중에 대한 우려도 소수의견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이 고려됨
- 향후 “정책지원관 운영·관리에 대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그렇다 33.3%, 잘 모르겠다 66.7%로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 아직까지 고민해 보지 않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음
- 조례 제정 시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에 대해서 정책지원관 업무 관련 규정, 평가 관련 규정, 채용 관련 규정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의회 규칙 정도로 충분하다는 응답도 있었음
- 정책지원관 근무 실적 및 업무 평가 주체에 대해 의회 사무국장 및 팀장이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의장 및 담당의원이 해야 한다는 의견이 뒤를 이음
- 기타 답변으로 1) 정책지원관 상호 평가, 의회 사무국장 및 팀장, 담당의원의 평가가 모두 필요하다는 의견, 2) 의회 사무국장 및 팀장이 평가하고 담당 의원의 의견도 일부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 정책지원관 운영 제도개선 방안으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행 공무원 신분으로 의원 1인당 1명의 정책지원관 확보라는 의견이 4표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함
- “의원이 직접 채용하는 의원 1인당 1명의 별정직 신분 보좌관” 2표, “정책지원관 채용 요건 강화”, “근무평정에 의원의 평가 포함”도 각각 1표씩 차지함

3) 소결

☐ 정책지원관 업무 및 지원에 대한 만족도는 긍정적 비율이 높음

- 정책지원관의 업무 만족도는 평균 3.8점으로 보통보다 조금 높게 나타남
- 정책지원관 보좌 및 의정활동 지원에 대한 의원의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5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긍정적인 만족도가 90%를 차지함

☐ 정책지원관 수의 적정성은 동의보다 부동의 비율이 더 높음

- 정책지원관 수의 적정성에 대해 의원의 60%가 부동의 한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동의하는 20% 대비 3배가 높은 비율임
- 정책지원관은 66.6%가 보통이라고 응답하여 부동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진 않았지만, 동의 0%, 부동의 33.4% 두 가지 응답을 비교하면 역시 부동의 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음

☐ “정책지원관 업무 매뉴얼” 등 공식적인 사무처리 규정 부재

- 설문 및 인터뷰 결과 특정 의원과 정책지원관이 개별 매치 되는 현재의 방식에서는 담당 의원에 따라 정책지원관의 업무 범주가 상이하고 업무 분장의 강도에도 차이가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예를 들어 한 명의 지원관이 두 명의 의원을 담당하다 보니 업무량이 많은 지원관의 경우 여유 인력이 없어 업무 분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두 명의 의원에게 동시에 업무요청을 받았을 경우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음
- 실제로 서대문구의회 정책지원관들에게 업무지원 요청이 동시에 들어왔을 때 처리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었는데 일부는 결과물의 질이 낮아지더라도 동시에 추진하여 동시에 마감, 일부는 다선의원의 업무를 우선 처리한다, 제출일이나 마감일이 촉박한 순으로 처리한다는 응답, 빨리 처리할 수 있는 일부터 처리한다는 응답까지 각자의 방식이 다양하게 나타났음

- 정책지원관이 두 명의 의원을 효율적으로 보좌할 수 있도록 업무 매뉴얼 등 사무처리 규정·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정책지원관 사무분장 및 적정 사무에 대한 합의 필요

- 설문 결과 정책지원관 적정 사무에 대한 의원과 정책지원관의 의견에 상당부분 차이점이 발견되었음
- 특히 정책지원관 운영 관련 조례를 제정할 때 가장 필요한 내용에 대해 의원과 정책지원관 모두 정책지원관 업무 관련 규정이라고 응답하여 정책지원관 업무에 대한 공식적인 정리가 필요함
- 정책지원관이 수행 가능한 적정업무를 구체화하여 자치법규에 규정하는 등 의원과 정책지원관 간 합의가 필요할 것임

□ 정책지원관 운영·지원 관련 조례 필요성 공감

- 서대문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정책지원관은 전체 응답자 중 33.3%로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2배 더 높게 나타났지만, 의원은 응답자의 60%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조례 제정에 대한 논의가 요구됨
- 조례에 가장 필요한 내용에 대해 의원은 업무 관련 규정, 채용 및 평가 관련 규정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정책지원관은 업무 관련 규정, 배치 관련 규정, 채용 및 평가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음

2. 단기 개선 과제(서대문구의회 차원)

1) 의회 운영 관련 자치법규 정비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안 발의 요건 규정

- 「지방자치법」은 의결할 의안을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지방의회 의원 찬성으로 발의하도록 규정(제76조)하고 있지만, 현재 서대문구의회는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있지 않음
- 관악구의회와 구로구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내 의안 발의 요건을 참고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원 발의 요건을 추가로 규정할 것을 제안함

[표 3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제00조(의안의 제출·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구청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제안하거나 발의한다. 이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연서로 발의한다.

(2) 의정활동 정보 공개 등 관련 자치법규 입법

- 서대문구는 「지방자치법」 제26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 투명성 제고와 관련하여 의정활동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하는 등 관련 자치법규 마련이 필요함
- 현재 의정활동 공개 조례를 단독으로 제정한 자치단체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유일하며 기초의회에서는 아직 별도의 입법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서대문구의회가 선도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정활동 공개 조례」를 입법하여 의정활동을 공개하는 등 주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을 제안함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활동 공개 조례」는 정보 공개 대상, 정보공개시스템 구축·운영, 청구 방법, 공개 여부 결정 통지, 비공개 결정과 불복 구제 절차 통지 등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 또한 의정활동 정보공개위원회 설치(구성, 운영, 의견 청취, 의원 해촉 등)에 관한 내용도 담고 있어 이를 참고할 수 있음

[표 4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정활동 공개 조례」 주요 내용(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의장의 책무) 서대문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제2조에 따른 의정활동 정보 등의 공개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공개 대상) 의회가 보유·관리하는 의정활동 정보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의정활동 정보의 사전적 공개)
제6조(의정활동정보공개시스템의 구축·운영)
제7조(의정활동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제8조(의정활동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제9조(의정활동 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제10조(비공개결정과 불복구제절차 통지)
제11조(의정활동정보공개위원회의 설치)
제12조(구성)
제13조(운영)
제14조(의견청취)
제15조(위원의 해촉)
제16조(비밀준수 등)
제17조(공개자료의 활용)
제18조(시행규칙)

- 별도 조례를 입법하지 않을 경우, 서울특별시의회 및 노원구의회, 영등포구의회를 참고하여 해당 내용을 포함한 기본조례를 제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와 동작구의회는 회의 규칙에 관련 내용을 규정함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기본조례」 입법

-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이후 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확대되었고 이를 반영하는 조례의 제·개정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관련 조례들을 통합하고 정리할 필요성이 대두됨
- 전국의 48개 지방의회가 의회 기본조례를 제정하였고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 25개 중에서도 11개의 의회가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서대문구도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의회 기본조례를 마련할 것을 제안함
- 기본조례는 타 지방의회 기본조례들을 참고하여 총칙, 정례회 등 회기 운영, 의회의 기관, 의원, 위원회와 위원 등의 내용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내부적인 논의를 통해 의원 전원회의, 의원 연구 활동 근거 등 보다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을 것임

□ 의원 전원회의의 관련 내용 포함 사례(서초구, 광진구, 성북구)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는 제66조(전원회의)에서 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전원회의 개최 관련 내용을 규정함
 - 의장은 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전체 의원 간 의견 수렴을 통해 그 결과를 의정에 반영할 수 있음
- 제53조 2(중기지방재정계획 등의 보고)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중기 기본운력운용계획, 세입예산의 징수 현황 및 사업별 세출예산 집행 상황 등 사업실적 등을 보고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의원 의정활동 공개 포함 사례(노원구, 영등포구)

- 노원구의회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 제66조(의정활동상황의 공개), 영등포구의회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제48조(의정활동상황의 공개)에 해당 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표 41]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 의정활동 공개 관련 조항(예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및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제00조(의정활동상황의 공개) ① 의장과 위원장은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의정활동상황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상황은 의회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개하되, 공개대상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간 회기운영계획, 회의체별 의사일정 및 회의록 2. 위원회 활동 결과 및 안전심사보고서 3. 행정사무감사·조사계획 및 결과보고서 4. 의안(청원을 포함한다)의 접수 및 처리 현황 5. 의원별 회의출석률, 의원발의, 구정질문 현황 6. 그밖에 의회나 위원회가 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

□ 의원 연구 활동 근거 포함 사례(서초구, 광진구)

- 서초구의회는 의회 기본 조례 제8장(의원연구활동 등)에서 입법업무 및 법률사안 관련 업무수행을 위해 입법·법률고문을 위촉·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며 의원연구단체 구성·운영에 대한 사항, 자문단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공청회, 전원회의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서대문구의회 기본조례 구성(안)

- 기본조례는 일반적으로 총칙, 회기 운영, 의회의 기관, 의원, 위원회와 위원,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답변 등, 질서 및 방청 등의 장으로 구성될 수 있음
- 서대문구의회가 기본조례를 제정하게 된다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등은 폐지되어야 할 것임

[표 4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기본조례」 (안)

조항	세부 내용
제1장 총칙	-목적: 조례의 규정 목적 -기본이념: 의회의 책임과 역할 -의회의 의정활동 원칙: 공정성과 투명성, 의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지원 -의원의 의정활동 원칙: 균형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 자

조항	세부 내용
	유로운 의사 표명 및 토론 기회, 의원의 의견과 인격 존중 등
제2장 정례회 등 회기운영	- 「서대문구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와 「서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에서 정한 기본 사항들을 해당 장에서 다루어야 함 -연간 회의일수: 정례회 2회, 총회의 일수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의 수립: 기본일정, 의원 총선거가 있는 경우 -회기: 정례회 회기, 임시회 회기, 임시회 소집 요건 -정례회의 집회일: 2회 정례회 집회일 -정례회의 안건 -임시회의 안건 -개회식 -<u>의안의 제출·제안·발의 요건: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76조에 따라 의안 발의 요건(찬성 의원 수) 규정</u>
제3장 의회의 기관 등	-의회 기본조례에서는 사무국의 설치 및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고 세부 내용은 「서대문구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함 -의장의 직무 등 -의장·부의장의 임기: 임기 규정 -의장·부의장의 선거: 선거 절차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보궐선거 -임시의장의 선거 -의장·부의장의 사임: 사임 절차 -사무국: 사무국 설치 근거 규정 등
제4장 의원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서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총칙에 규정된 의원의 역할(등록, 의석배정, 선서, 청가 및 결석, 사직 등)에 해당하는 사항과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내용을 다루도록 함 -의원 겸직 신고를 하도록 하고 그 내용에 대해 의회 홈페이지 및 그 외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공개하도록 함 -지방자치정보(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집행기관의 조직, 재무 등)를 「정보공개법」에 따라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 -등록 -의석배정 -선서 -의원의 청가 및 결석

조항	세부 내용
	-의원의 사직: 사직 절차 -자격심사청구서의 회부 등 -청구서와 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제5장 위원회와 위원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와 「서대문구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의 기본사항에 대한 내용을 다루도록 함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로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 심사를 위한 윤리특별위원회를 두고 별도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함 -위원회의 설치 -상임위원회의 직무 -상임위원회와 위원 정수 -상임위원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의 위원 -상임위원회의 임기 -상임위원장 -상임위원장 불신임의 의결 -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 위원장 -위원의 선임 -위원장의 직무 -부위원장 -소위원회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 청취 -전문위원과 공무원 -전문가의 활용 -연석회의
제6장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 및 답변 등	-「서대문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의 내용을 포함하며 의회의 권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상세한 내용은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도록 함 -구청장 등의 출석요구 -구청장 등의 발언 -구정질문 -구청장에 대한 서면질문 -서류제출 요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등의 보고 -회의록

조항	세부 내용
제7장 질서와 경호	-경호 -회의의 질서유지 -회의장 출입의 제한 -방청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등
제8장 의정활동 상황 공개	-<u>의정활동상황의 공개</u> ·연간 회기 운영계획, 회의체별 의사일정 및 회의록 ·위원회 활동 결과 및 안전심사보고서 ·행정사무감사, 조사계획 및 결과보고서 ·의안(청원을 포함)의 접수 및 처리 현황 ·의원별 회의출석률, 의원발의, 구정질문 현황 ·그 밖에 의회나 위원회가 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 -회의록 등
제9장 의원연구활동 등	-입법·법률고문 -의원연구단체 -공청회 등 -<u>전원회의</u>: 전원회의 개최 기준 및 요건, 과정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의장에게 요구 ·전원회의 주관은 의장, 부의장, 운영위원장, 참석의원 중 다수의원, 참석의원 중 연장자 순으로 함 ·의장은 전원회의의 결과를 의정에 반영할 수 있음 -준용규정

2) 정책지원관 운영 개선

□ 서대문구의회 특성을 고려한 정책지원관 배치

-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역할 증대, 행정수요 증대 및 다양성에 대응하기 위해 의회의 전문성 강화,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정책보좌관이 필요함을 오랫동안 요구해 왔으나 대법원에서 지방자치법령상 근거가 부재하다는 사유로 무효 판결을 받은 바 있음⁵⁾
- 서대문구의회 의원과 정책지원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설문
에 참여한 의원의 60%가 정책지원관 수가 적정하지 않다고 응답하였고,
한 명의 정책보좌관이 의원 2명을 보좌하는 현실에서 어려움을 토로하
였음
- 정책지원관의 업무 배분 시 상임위 및 전문적인 의정활동 지원에 초점
을 둘 것인지 의원 개인의 의정활동 지원에 집중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
이 필요함⁶⁾”
- 서대문구의회는 의원별로 정책지원관을 배치하고 있는데 현재의 방식에
서는 의원 개인 맞춤형 지원이 가능한 반면 한 명의 정책지원관이 담당
하는 의원의 정당이 다르거나 상임위가 다른 경우 업무가 가중될 가능
성이 있음
- 보좌하는 의원이 재선인지 초선인지에 따라서도 업무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함
-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별 의원 대상으로 개인 정책보좌관 도입이 요구되
지만 현재까지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정책지원관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현실이기에 차선택으로써 서대문구의회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지원
관 배치 및 업무 우선순위 부여 등의 개선이 요구됨

5) 주희진(2023), 정책지원관의 효과적 활용방안에 대한 제언

6) 위와 동일

- 또한 향후에도 서대문구의회 정책지원관을 의원별로 배치할 경우 동일한 상임위, 정당 등 매칭 조건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의원들 간 사전 합의가 요구됨
- 정책지원팀장은 각 지원관의 업무가 적절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총괄하고, 의원 간 혹은 정책지원관 간 합의되지 않은 업무들에 대해 컨트롤하는 역할을 진행해야 함

□ 정책지원관 적정업무 범위 구체화

- 현재 서대문구의회 사무분장 규칙에 따른 정책지원관 사무분장에 대해서는 의원과 정책지원관 모두 적정하다고 응답하여 현행 사무분장 내용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
- 그러나 서대문구의회 사무분장에 규정된 정책지원관 업무 외에도 기존에 정책지원관이 수행했거나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살펴본 결과 각 의원별, 정책지원관별로 정책지원관의 적정 사무를 판단함에 있어 상당 부분 차이가 발견되어 이에 대한 합의가 필요한 시점임
- 특히 의원의 개인 홈페이지 및 소셜네트워크 등을 활용한 주민 소통과 관련하여 설문에 참여한 의원의 70%가 해당 업무를 정책지원관의 적정업무라고 응답한 반면, 설문에 참여한 정책지원관은 100% 모두 절대 불가한 업무라고 응답하여 동일 업무에 대한 의원과 정책지원관의 인식이 상반되는 업무가 존재함이 확인됨
- 서대문구의회는 정책지원관이 수행가능한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공론화하여 정책지원관의 업무가 아님에도 의원 혹은 정책지원관 개개인의 판단에 따라 업무를 의뢰하거나 수행하는 일이 없도록 적정업무에 대한 범위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 합의가 필요한 업무: 의정활동 성과 및 실적 통계 관리, 지출 처리 등 단순 행정업무, 민원처리 관리, 의원의 의정활동 홍보 등
 - 부적절한 업무: 주민 여론조사, 의원의 개인 부탁 및 정당활동 지원 등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책지원관 사무처리 규정」
제정

- 서대문구의회에는 정책지원관 사무처리 규정 등 구체적인 업무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의원마다 정책지원관에게 의뢰하는 내용과 범위가 다르거나 정책지원관이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업무 처리 순서와 절차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실정임
- 이에 정책지원 사무처리 체계와 절차를 마련하여 정책지원관의 업무가 적절하게 배분되어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보좌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책지원관 사무처리 규정」을 제정할 것을 제안함
- 사무처리 규정을 통해 작성된 자료들은 향후 서대문구의회 정책지원관의 업무 범위와 세부 내용, 처리 과정 등에 대한 데이터 축적으로 이어져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대한 평가 시 객관적인 근거 자료로 삼을 수 있을 것임
- 현재 「정책지원관 사무처리 규정」 자치법규를 제정·운영하고 있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원주시의회, 양주시의회 등을 참고할 수 있음
-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정책지원관 사무처리 규정은 의원이 정책지원관에게 정책지원을 의뢰할 때 의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정책지원관은 해당 사안에 대한 절차 및 처리 기한을 의원과 합의하여 처리한 후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명시함

[표 43]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정책지원관 사무처리 규정 내용(2022.10.26. 제정)

제3조(정책지원 의뢰와 처리) ① 의원은 정책지원 전문인력(이하 “정책지원관”이라 한다)에게 정책지원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의원이 정책지원을 의뢰할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정책지원 의뢰서를 작성하여 정책지원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책지원관은 정책지원 의뢰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처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④ 정책지원관은 의뢰받은 사안에 대하여 정책지원을 의뢰한 의원과 절차, 처리기한 등을 협의하여 처리한다.
 ⑤ 정책지원관은 정책지원이 완료되면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의원에게 송부한다.

제4조(정책지원 철회 및 반려) ① 정책지원관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안이 이미 접수된 경우 정책지원을 의뢰한 의원과 협의하여 의뢰를 철회하도록 하거나 종결 처리할 수 있다.

②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의뢰하였을 때 정책지원관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려하거나 종결 처리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다른 자치법규에 위반되는 사항
2. 국가 및 공공기관의 기밀에 속하는 사항
3. 관련 자료의 수집이 불가능한 사항
4. 과도한 인력 또는 예산이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항

제5조(의견청취 등) ① 정책지원관은 정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② 정책지원관은 검토결과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자료: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정책지원관 사무처리규정」

<https://www.elis.go.kr/allalr/selectAlrBdtOne?alrNo=29170108000013&histNo=001&menuNm=main>)

- 경기도 양주시의회는 정책지원관 업무의 정의 및 범위, 의원연구단체 운영지원, 토론회 개최 지원, 정책자문 의뢰지원 등 세부 내용을 「양주시의회 입법 및 정책지원 규칙」(2022.8.11. 제정)에서 규정하고 있음
- 업무요구 방법 및 처리 방법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와 유사하게 의원이 정책지원관에게 업무요구서를 전달하고 정책지원관은 요구서를 업무 처리대장에 기록하여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으며, 제2조(정의)에서 “사적 사무”에 대한 정의 및 범위를 명시함

[표 44] 경기도 양주시의회 정책지원관 입법 및 정책지원 규칙 세부내용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지원관”이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 및 「양주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수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정책지원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전문위원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포함한다.
2. “자치법규안”이란 양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발의하는 의안 형식의 조례안 또는 규칙안을 말한다.
3. “현안과제”란 의원이 의정활동 중 자료수집 및 분석, 정책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과제를 말한다.
4. “정책지원”이란 현안과제의 처리를 위한 의원연구단체 운영지원, 토론회 개최지원, 정책자문 의뢰지원 등을 말한다.
5. “사적사무”란 「공직선거법」 제9조제1항의 공무원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거나, 「공무원 행동강령」 제10조의2의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사무를 말한다.

제3조(업무의 범위) ① 정책지원관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직무 수행을 위해 다음 각호의 업무를 지원한다.(중략)

- ② 의원이 제1항제1호의 업무를 정책지원관에게 요구하는 경우 필요하면 「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소관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의원연구단체 운영지원) 의원은 정책지원관에게 「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의원연구단체의 운영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토론회 개최지원) ① 의원은 현안과제에 대하여 「양주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토론회 개최지원을 정책지원관에게 요구할 수 있다.

- ② 정책지원관은 토론회를 개최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토론회 개최지원을 요구한 의원에게 즉시 보고하고, 토론회의 변경 혹은 취소를 협의할 수 있다.

제6조(정책자문 의뢰지원) ① 의원은 현안과제의 정책지원을 위하여 정책지원관에게 「양주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따라 위촉된 입법 및 법률고문 혹은 그에 준하는 전문가의 정책자문 의뢰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정책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정책자문 요구가 있을 경우 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요구한 의원에게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의원과 협의하여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③ 제1항의 정책자문 의뢰 대상 중 「양주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따라 위촉된 입법 및 법률고문을 제외한 전문가에게는 필요한 경우 「양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제3조에 따른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7조(업무요구 방법) ① 의원이 업무 수행을 요구할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업무요구서를 작성하여 정책지원관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 ② 의원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사항에 대해 요구할 경우 정책지원관에게 사적사무 혹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업무를 포함할 수 없다.

제8조(업무처리 방법) ① 정책지원관은 제출된 업무요구서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업무처리대장(전자문서 형태를 포함한다)에 기록·관리하고,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정책지원관은 업무별로 업무를 요구한 의원과 업무처리 일정을 협의하며, 업무처리 결과를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자료: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양주시의회 입법 및 정책지원 규칙」)

<https://www.elis.go.kr/allalr/selectAlrBdtOne?alrNo=41630101000058&histNo=001&menuNm=main>

- 원주시의회는 「원주시의회 정책지원 사무처리 규정」(2023.9.1. 제정)에서 정책지원 의뢰서 접수 과정 및 담당 정책지원관 지정, 중간보고, 처리 기간, 철회 등에 대해 상세하게 명시하고 있음
- 제4조, 제5조에 의거하여 정책지원팀장은 의뢰받은 지원 과제를 담당할 지원관을 지정하고 업무의 방향과 범위, 내용에 대해 협의할 수 있음
 - 제7조는 각 의뢰 업무에 대한 처리 기간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8조~10조에 따라 정책지원관은 최종결과물을 팀장에게 검토받은 후 의뢰 의원에게 보고할 수 있음

[표 45] 원주시의회 정책지원관 임명 및 정책지원 규칙 세부내용

제4조(의뢰서 접수 및 담당정책지원관 지정) 팀장은 의뢰의원이 제3조에 따라 제출한 의뢰서를 접수하고 의뢰받은 지원과제를 담당할 정책지원관(이하 “담당정책지원관”이라 한다)을 지정한다.

제5조(사전 협의) 담당정책지원관이 지원과제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에 수행방향, 범위 및 내용 등에 관하여 의뢰의원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제6조(중간 보고 및 조정) ① 담당정책지원관은 설명이나 의견교환 등의 방법으로 지원과제의 수행 상황을 의뢰의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담당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지원과제가 법령을 위반한 경우 2. 지원과제가 예산상 또는 행정상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제5조에 따른 사전 협의 내용에 따라 지원과제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담당정책지원관이 판단한 경우

③ 팀장이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 의뢰의원과 협의하여 지원과제의 업무를 중단하거나 제5조에 따른 사전 협의 내용을 참고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7조(처리기간) ① 담당정책지원관은 제3조에 따른 의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 내에 지원과제의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1.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와 관련한 지원: 30일 이내 2. 예산 또는 결산 등의 재정사항과 관련한 지원: 20일 이내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25일 이내 4. 시정질문 지원: 25일 이내 5. 5분 자유발언 지원: 15일 이내 6.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행사 지원: 60일 이내 7. 언론 보도자료 및 행사 발언자료 등 작성 지원: 15일 이내 8. 그 밖에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의정활동과 관련한 지원: 의뢰의원과 협의하여 결정한 기간 이내

② 담당정책지원관이 지원과제의 시의성, 접수건수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지원과제의 업무를 처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팀장이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성을 인정하면 의뢰의원과의 협의를 통해 제1항에 따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결과물 검토 및 보고) ① 담당정책지원관이 지원과제의 업무를 완료한 경우에 그 결과물에 대해 팀장에게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② 담당정책지원관은 제1항에 따라 검토받은 결과물을 의회의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결과보고서 작성 및 최종결과물 전달 등) ① 담당정책지원관은 제8조제2항에 따라 보고한 결과물에 대해 의회의원의 이의가 없는 경우에 별지 제2호서식의 의뢰과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팀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팀장은 결과물(이하 “최종결과물”이라 한다)을 의원에게 전달해야 한다.

제10조(수정·보완의 요청 등) ① 의회의원은 제8조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결과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 팀장이나 담당정책지원관에게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담당정책지원관이 결과물에 대한 수정·보완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팀장 및 담당정책지원관은 결과물에 대한 수정·보완에 관해서는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다.

제11조(철회 등) ① 의회의원은 제9조제2항에 따라 최종결과물을 전달받거나 이행하기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의뢰과제 철회서를 팀장에게 제출하여 의뢰과제에 대한 의뢰를 철회할 수 있다.

② 팀장이 제6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원과 협의하여 지원과제의 업무를 중단한 경우에는 의뢰과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③ 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원과 협의하여 검토 의뢰를 철회한 것으로 간주하여 내부 종결 처리할 수 있다. 1. 동일하거나 유사한 자치법규안이 이미 시행중인 경우 2.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자치법규안이 이미 접수되거나 발의된 경우

④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사항을 처리하는 경우 팀장은 검토를 의뢰한 의원에게 종결사항에 대하여 구두 또는 서면으로 알린다.

(자료: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원주시의회 정책지원 사무처리 규정」)

<https://www.elis.go.kr/allalr/selectAlrBdtOne?alrNo=42130100000053&histNo=001&menuNm=main>

[표 46] 원주시의회 정책지원 의뢰 업무 처리 절차

절 차	내 용
1. 입법·정책지원과제 의뢰 (의원→정책지원팀장)	■ 의원은 ‘입법·정책지원과제 의뢰서’ 작성·제출
2. 의뢰서 접수 및 담당정책지원관 지정 (정책지원팀장)	■ 정책지원팀장 접수 및 담당정책지원관 지정 - 의뢰과제 관리대장 등록 - 담당정책지원관 지정
3. 사전협의, 중간 진행상황 보고 및 조정 (담당정책지원관↔의원)	■ 담당정책지원관은 의뢰과제에 대해 의원과 사전협의(면담) - 의뢰과제의 수행방향·범위·내용 등 협의 ■ 의뢰과제에 대한 중간 진행상황 수시보고 ■ 의뢰과제 내용 조정필요시 의원과 수시 협의·조정 ■ 의뢰과제의 수행이 위법 또는 직무범위 외인 경우 → 의원과 협의로 조정 또는 처리여부 결정 * 필요시 유권해석 등 활용
4. 자료 조사·검토 및 결과물 작성 등 (담당정책지원관)	■ 기초조사, 자료검토, 결과보고서(안), 계획서(안) 등 작성 - (필요시)서면질문(서류제출요구), 자문, 이해관계인 등 의견청취 활용
5. 결과물 검토, 의원보고, 수정·보완요청 및 반영 (정책지원팀장↔의원)	■ 정책지원팀장은 작성된 결과물(안) 또는 이행계획(안) 검토 ■ 정책지원팀장은 검토 완료 자료를 의원에게 보고 ■ 의뢰의원의 결과물에 대한 수정·보완요청 및 반영
6. 결과물 결재 및 최종결과물 전달·이행 등 (정책지원팀장→의원)	■ 결과물(보고서, 계획서 등) 결재 후 의회의원에게 전달 또는 이행 ■ 의뢰과제 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정책지원팀장)

(자료: 「원주시의회 정책지원 사무처리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 정책지원관 사무처리 관련 규정은 정책지원관이 의뢰받은 사안이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이를 철회하거나 반려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로 활용할 수 있어 정책지원관이 불필요하거나 애매한 업무에 시간을 낭비하거나 의원의 눈치를 보지 않도록 뒷받침함
- 이에 서대문구의회도 타지방의회를 참고하여 정책지원 의뢰 및 절차 관련 업무 서식을 마련하고, 나아가 관련 규정을 제정할 것을 제안함

[표 47] 정책지원관 정책지원 관련 주요 서식 내용

구분	작성자	주요 내용
정책 지원 의뢰서	의원	- 접수일 - 의원명 - 소속상임위 - 구분 ▪ 자치법규 제·개정 등 입법 관련 사항 ▪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결사항 관련 사항 ▪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 구정 질문서 작성 지원 ▪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 기타 의정 활동 등 지원 - 지원 사항 ▪ 지원 의뢰명 ▪ 목적 및 내용
정책 지원 결과 보고서	정책지원관	- 의뢰 의원명 - 의뢰일시 - 지원 의뢰명 - 처리 결과 - 비고
의정활동 접수처리대장	정책지원관	- 연번 - 접수일자 - 신청의원명 - 지원내역 - 처리결과 제출일 - 담당자 등

□ 정책지원관 인사 평가에 의장 및 담당 의원의 의견 반영

- 정책지원관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사무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 있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무국 평가 뿐 아니라 정책지원관이 보좌하는 주체인 구의회 의장 및 의원의 의견을 인사평가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의원별로 정책지원관을 배치할 경우 평정자와 평정 대상 공무원이 모두 상이하고, 경우에 따라 의회 업무가 지역 활동인지 의정활동인지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아 평가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올 수 있음
- 앞에서 제시한 정책지원관 사무처리 규정을 통해 정책지원관 운영 실적 등 관련 자료가 누적되면 필수업무 및 불필요한 업무 등에 대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고 나아가 정책지원관 평가에 대한 근거로 사용될 수 있을 거라 판단됨

□ 정책지원 및 의정활동 보좌 강화를 위한 홍보팀 강화

- 홍보의 영역은 정책지원관의 고유 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원의 의정활동 홍보에 대한 개인 소셜네트워크 홍보를 정책지원관이 해야 한다는 의원 의견이 상당하여 홍보 범위 및 주체에 대해 공식적이고 명확한 업무 분담이 요구됨
- 또한 공무원 신분인 의회 직원이 의원의 의정활동을 홍보하는 보도자료 및 홍보물을 배포할 경우 선거법 위반 행위로 규정될 수 있어 홍보팀이나 정책지원관이 개별 홍보를 담당하는 것에 주의가 필요함
- 의회 홈페이지 및 의원별 공식 홈페이지는 사무국 홍보팀 차원에서 관리하고 기타 개인 소셜 네트워크 홍보 등은 의원 각자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만 의회 홈페이지 및 의원 공식 홈페이지 운영·관리, 영상 촬영 및 편

집 업무는 의회 홍보팀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사무국 홍보팀 자체적으로 홍보 채널 및 활동을 확대하기 어려울 경우
홍보 관련 조례 입법을 통한 홍보 강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군산시의회 의회는 의회 홍보 조례를 입법하여 홍보활동의 원칙 및 내용, SNS 운영, 자료 관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광주광역시 북구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홍보 조례에 의정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 조항을 담아 서포터즈가 홍보매체를 활용한 의정활동 홍보, 콘텐츠 제작 등에 참여하도록 규정함
 - 군산시의회는 조례에 홍보기자단 구성 및 운영 조항을 담아 기자단이 의정홍보 콘텐츠 개발 및 제작에 참여하도록 하고 의정발전에 필요한 제도 개선사항, 시민 불편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역할도 수행함
- 서대문구의회 홍보 조례가 아니더라도 현행 사무분장 규칙에 홍보 관련 업무 분장을 추가로 포함하여 의원활동 보좌 관련 홍보 업무에 대한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서대문구의회 사무국 사무분장 규칙은 사무국장, 전문위원, 정책지원관의 사무에 관한 내용만 포함되어 있음

□ 정책지원팀 내 행정 전문인력 보완 등

- 정책지원팀 내 서무 등 행정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기존의 사무국 행정 부서에 해당 업무를 분담할 것을 제안함
- 정책지원관이 담당하는 업무 중 연구단체 관련 행정, 보도자료 작성, 회계 처리 등은 기존에 의회 사무국에서 담당하는 업무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지원관제도가 생기면서 의원과 관련된 업무들이 그대로 정책지원팀 업무로 넘어와 이것이 합당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의원 연구단체 운영·지원 내 단순 행정업무, 주간 업무 현황 제작관리,

정책지원 서비스 통계 분석 등 문서처리가 주요한 행정업무로 인해 정책지원관이 의정활동 보좌라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는 정책지원관을 관리·운영하는 팀에 서무 담당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있음

－ 송파구의회는 운영지원팀에서 정책지원관을 관리·운영함

－ 운영지원팀은 운영지원팀장 1명, 정책지원관 13명, 직원 교육 및 민원 처리 등 관련 업무 담당 1명, 정책지원관 채용·운영 및 의원 교육 등을 담당 1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구로구의회도 정책지원팀 내 팀장, 정책지원관 외 국내외 의원 연수, 의원 교육을 담당하는 인력이 각각 배치되어 있음

－ 정책지원팀장 1명, 정책지원관 8명, 국내외 의원 연수 담당 1명, 의원 교육 담당 1명 등 정책지원팀이 총 11명으로 구성됨

3) 정책지원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서대문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것을 제안함
- 해당 조례에는 정책지원관 직무범위를 구체화하고 정책지원관의 지휘 및 감독체계를 명시, 정책지원관 근무실적 평가 규정, 정책지원관 의정지원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등을 규정할 수 있음
- 2023.10.10. 현재 정책지원관 설치·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 지방의회는 광역의회 2개, ,자치구의회 18개임⁷⁾

□ 정책지원관 운영 관련 조례를 제정한 광역의회는 2곳

- 광역의회 중 정책지원관 설치·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 지역은 서울특별시의회와 경상남도의회 두 곳임
 -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정책지원관 운영에 관한 규칙(2023.5.18.)
 - 경상남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 조례(2023.2.2. 일부개정)
- 서울특별시의회회는 경상남도의회와 비교하여 조례 내용이 세부적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제3조(채용)에서 채용 주관 및 절차 등을 규정함
 - 제4조(임용계획의 수립), 제5조(응시자격 요건), 제6조(시험과목), 제7조(시험위원), 제13조(직무범위), 제14조(지휘·감독), 제15조(배치)까지 내용이 구체적으로 구성됨

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ordinScNw.do?menuId=3&subMenuId=35&tabMenuId=163&eventGubun=060103&query=>

[표 48] 광역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관련 조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정책지원관 운영에 관한 규칙	경상남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48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지원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7.>
제2조(신분 및 직급) 정책지원관은 <u>일반임기제 6급</u> 으로 한다.	제2조(정책지원관의 배치) ① 경상남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경상남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 또는 사무처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이하 "정책지원관"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3.2.2.> ② 제1항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배치할 때에는 실무경력 및 전공분야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신설 2023.2.2.> ③ 의장은 정책지원관의 담당 업무 및 근무환경에 대한 적응, 다양한 업무경험 습득 등을 위하여 정책지원관을 순환 배치할 수 있다. <신설 2023.2.2.>
제3조(채용) ① 정책지원관의 채용은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 주관으로 실시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부 채용 사무에 관해서는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정책지원관 채용절차는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 순으로 한다. 다만, 필기시험은 생략하거나 서류전형 또는 면접시험과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조 삭제(2023.2.2.)
제4조(임용계획 수립) 의장은 임용계획을 수립하여 임용공고 이전에 서울특별시의회의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조(사무분장 및 지휘·감독) ①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휘를 받아 처리한다. <개정 2023.2.2.> 1. 조례 제정·개정 및 폐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정책지원관 운영에 관한 규칙	경상남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 조례
	지,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2.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도정 질문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5.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및 참석에 필요한 자료 작성 등 지원 6.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② 정책지원관의 소속 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책지원관의 사무에 대하여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관리·감독한다. <개정 2023.2.2.> ③ 의회사무처장은 제1항에 따른 사무 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 정책지원관을 지휘·감독한다. <신설 2023.2.2.>
제5조(응시자격 요건) 정책지원관의 응시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사 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제6조(시험과목) 의장은 정책지원관 선발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과목에 대한 필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론 2. 지방의회실무 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목	
제7조(시험위원) 의장은 정책지원관 선발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과목에 대한 필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론 2. 지방의회실무 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목	
제8조(시험의 공고)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정책지원관 운영에 관한 규칙	경상남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 조례
제9조(응시원서 접수)	
제10조(합격자 공고)	
제11조(임용약정)	
제12조(보수 등 고지)	
제13조(직무범위)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2.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서류(자료) 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의원의 민원 관련 자료의 수집 조사·분석 등 지원 7. 의원의 교·공무국외활동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분석 및 연구 등 지원 8. 입법정책 연구용역 및 의원정책개발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분석 및 연구 등 지원 9. 의원의 소속 연구단체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분석 및 연구 등 지원 10. 의원의 의정활동 보도자료 등 언론 관련 자료 작성·수집·분석 및 지원 11. 그 밖에 의원의 의정활동 관련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지원	
제14조(지휘·감독) 정책지원관은 제13조에 따른 소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의원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15조(배치) 정책지원관은 사무처 정책지원담당관에 둔다. 다만, 의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근무지를 의원실로 할 수 있다.<개정 2023.5.18>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정책지원관 운영에 관한 규칙	경상남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 조례
제16조(친족 등 채용사실의 신고 및 공개) 의원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정책지원관으로 임용되는 경우 해당 의원은 그 사실을 사무처에 알려야 하고, 의장은 이를 의회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제1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의 정책지원관 임용, 복무, 보수, 후생복지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침 등 지방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을 따른다.	

□ 정책지원관 운영 관련 조례를 제정한 자치구의회의는 18곳

- 자치구의회의 중 정책지원관 설치·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 지역은 서울 관악, 서울 양천, 서울 강북, 인천 남동, 인천 동구, 인천 부평, 광주 북구, 강원 원주, 경기 성남, 경기 용인, 경기 수원, 경기 가평, 경남 창원, 경남 김해, 경남 진주, 부산 연제, 부산 해운대, 대구 수성으로 18곳임
- 이 중 2023년에 정책지원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자치구의회의는 6 곳으로 부산 연제구(2023.6.28.), 부산 해운대(2023.9.27.), 서울 강북(2023.5.12.), 인천 동구(2023.5.2.), 인천 부평(2023.9.27.), 경기 가평(2023.4.12.), 경남 김해(2023.3.30.), 대구 수성(2023.9.20.)이 있음
-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 중 정책지원관 관련 조례가 제정된 곳은 관악구의회의, 양천구의회의, 강북구의회의 세 곳으로 해당 조례에는 목적, 임용 및 배치, 비밀엄수 등에 관한 조항이 규정되어 있음
- 조례가 별도로 제정되지 않은 지방 및 자치구의회의의 경우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등에서 정책지원관 운영 및 구성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의 한계가 존재함

□ 정책지원관 신분 및 직급 명시

- 정책지원관 신분 및 직급에 대해 관악구의회는 7급 이하의 일반직지방 공무원으로 하며,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 2제 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만으로 임명할 수 있다고 규정함
- 양천구의회와 강서구의회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일반직임기제 7급 이하의 지방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표 49]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 정책지원관 조례 내 직급 명시 조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서울특별시 양천구	서울특별시 강북구
제2조(설치 및 임용 등) ② 정책지원관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사무국에 두며, 법 제41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5항에 따라 <u>7급 이하의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보(補)한다.</u> ③ 제2항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만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3조(임용 및 배치)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라 한다)은 정책지원관을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u>일반임기제 7급 이하의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여 보한다.</u>	제2조(임용 및 배치)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정책지원관을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u>일반임기제 7급 상당의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한다.</u>

□ 정책지원관 직무 명시

- 「정책지원관 운영·관리에 대한 조례」를 제정한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 중 정책지원관의 직무를 조례에서 규정하는 곳은 양천구의회와 강북구의회 두 곳이며 관악구의회는 조례에서 정책지원관 직무를 별도로 명시하지 않음

- 양천구의의회와 강북구의의회 정책지원관 직무 관련 내용은 동일함
- 두 곳 모두 정책지원관의 의원 정책 및 의정활동 지원 업무는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그 외 일반적 사무에 대해서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일반적 사무에 대한 업무 범위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음

[표 50] 서울특별시 자치구의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조례 내 직무 관련 조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의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의회
제4조(정책지원관의 직무) ①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정책 및 의정활동을 지원함에 있어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의 수집·조사·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지원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구정 질의서 작성 지원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의 규정과 관련된 자료 수집, 분석, 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② <u>정책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의회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u>	제3조(정책지원관의 직무) ① 정책지원관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정책 및 의정활동을 지원함에 있어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의 수집·조사·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지원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구정 질의서 작성 지원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의 규정과 관련된 자료 수집, 분석, 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② <u>정책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의회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u>

☐ 교육훈련에 대한 사항 명시

- 세부 업무 분장 구체화, 순환 업무 등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을 마련하고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정책지원관 직무 교육 실시 및 이수 실적을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정책지원관 업무역량 강화

기반 마련 필요

- 정책지원관 교육훈련에 관한 내용을 조례에 담은 곳은 양천구의회 한 곳이며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에 대한 조례」 제6조에서 정책지원관 직무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교육 이수 실적 평가 반영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서대문구의회가 정책지원관 운영 관련 조례를 제정한다면 교육 훈련에 대한 조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표 51]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조례 내 교육훈련 관련 조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교육훈련) ① 관리부서는 정책지원관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는 정책지원관의 교육훈련 이수 실적을 근무실적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 임용 기간 및 지회의원 지정 여부 등

- 「정책지원관 운영·관리에 대한 조례」를 제정한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 중 정책지원관의 임용 기간을 조례에 명시한 곳은 관악구의회 한 곳이며 관악구의회는 해당 조례에 따라 정책지원관 채용 기간을 최초 1년 이하, 최장 4년까지로 정하고 있음
- 양천구의회와 강북구의회는 조례 내 임용 기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음
 - 다만 정책지원관 채용공고를 살펴보면 양천구의회는 정책지원관 임용 기간을 최초 임용일로부터 1년으로 규정하고, 근무 실적 평가 등에 따라 5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하다고 명시함(2023.10. 기준)
 - 강북구의회는 채용공고에서 최초 임용 기간을 2년으로 하고 근무 실적에 따라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하다고 명시함(2023.3. 기준)
- 지회의원의 지정에 대해 양천구의회와 강북구의회는 정책지원관의 직무와 관련한 조항에서 ‘정책 및 의정활동을 지원함에 있어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그 외의 직무에 대해서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관악구는 ‘사무국장이 정책지원관의 지휘위원을 지정’하도록 하는 별도의 조항을 규정하고 있음

[표 52]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 정책지원관의 임용 기간 및 지휘위원 지정 관련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조(설치 및 임용 등) ⑤ <u>정책지원관의 최초 채용기간은 1년 이하로 하며, 최장 4년까지 근무할 수 있다.</u>		
제3조(지휘위원의 지정) <u>사무국장은 각 정책지원관의 지휘위원을 지정한다.</u>	제4조(정책지원관의 직무) ①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정책 및 의정활동을 지원함에 있어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중략) ② 정책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의회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3조(정책지원관의 직무) ① 정책지원관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정책 및 의정활동을 지원함에 있어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중략) ② 정책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의회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 비밀엄수에 관한 사항 규정

- 관악구의회, 양천구의회, 강북구의회 모두 직무상 알게 된 정책 수립 관련 정보 중 외부에 공개할 경우 정책결정에 부당한 영향이나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해 누설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은 동일함
- 양천구의회와 강북구의회는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등의 단서 조항 없이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정보는 누설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에 관한 조례」 (안)

○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정책역량 강화 및 의정활동 지원에 대한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

- 정책지원관의 정의

- 관리부서 정의

○ 정책지원관 임용 및 배치에 관한 사항

- 정책지원관 배치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직급 규정 등

○ 정책지원관 공개채용 등 채용 원칙,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 등 채용 절차

- 정책지원관 응시 자격, 직무 범위를 상세히 기입하도록 하고 정책지원관 채용 및 배치 시 관련 전공과 경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규정

○ 정책지원관의 직무 및 지휘·감독 권한에 관한 사항

- 정책지원관 업무 범위에 대해서는 업무 범위에 대한 규정을 열거하는 방식보다 금지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정책지원관의 비밀유지 엄수에 관한 사항

○ 정책지원관의 근무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 현재 「지방공무원법」 제7조 6항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지휘·담당하는 의원은 인사위원회에 위촉될 수 없어 정책지원관 평가에 권한이 없는 실정이지만 서대문구의회는 정책지원관 최초 채용 시 근무 기간을 1년으로 하고 업무 성과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연장 가능하여 정책지원관 업무 평가가 근무연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함
- 이에 정책지원관 업무 평가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프로세스를

마련하여 「정책지원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해당 내용을 규정할 필요
요가 있음

○ 정책지원관의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 교육훈련 실시 규정

－ 교육훈련 이수 실적, 근무 실적 평가 반영 등

3. 중장기 개선 과제 (법령 개선 차원)

1)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반면 의회의 독립성 확보 및 전문성 강화 측면에서 여전히 한계점이 존재함⁸⁾
 - － 정책지원 전문인력 정원 한정으로 의원 의정활동 지원 강화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
 - －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급과 직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여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의원 역량 강화 측면에서 미흡한 수준임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 실제 의장이 가지는 권한은 의회 대표권, 의회 사무기관 관리·감독, 사무기구 소속 공무원 인사권 정도에 머무르며 임용에 따르는 임용시험의 문제, 승진, 인사 교류, 성과평가, 교육훈련 등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실정임
-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독립된 기준인건비 신설, 직급 상향 및 인력 확대, 조직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함

□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대 요구

- 충실한 의정활동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 1인당 1명의 정책지원관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함

□ 의회 예산편성권 독립

- 단기적으로 의회 예산 편성 시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제도화 필요
- 장기적으로 국회처럼 의회 예산편성권 근거를 법률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8) 정기용(2023),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과 관련 법률안 입법동향

2) 지방의회법 입법

- 지방의회 조직구성권, 예산편성권을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지방의회가 본연의 기능인 “집행부 견제 및 감시”를 수행하기에는 사실상 한계가 존재함
- 의회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고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넘어선 지방의회 조직권 및 예산권 독립 등 의회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이 필요함
- 지방의회의 조직·예산·운영 등을 규정하는 「지방의회법」을 입법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위상을 정립하고 독립성을 강화해야 할 것임

□ 지방의회법안 입법 추진 현황

- 그동안 지방의회법안은 20대 국회인 2018년 전현희의원안이 발의되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으며 21대 국회에 발의된 지방의회법안은 2023년 11월 기준 4개 법안으로 이해식의원 법안, 서영교의원 법안, 이원욱의원 법안, 박성민의원 법안임
- 전국시도의장협의회나 전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 등에서 지방의회법 입법을 계속 촉구하고 있으나 21대 국회 임기가 내년 6월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또다시 폐기될 가능성이 높음

□ 지방의회법안 조속한 입법 촉구 필요

-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으로는 지방의회의 독립성에 한계가 분명하다는 점을 알리고 그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의회법」 입법이 필요함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야 할 것임
- 전국시도의장협의회나 전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 등을 통해 새롭게 구성되는 22대 국회에서 「지방의회법」 입법을 최우선 과제로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 김건위 외(2021), 지방분권 확대에 따른 지방의회 의정역량 제고 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2021-02
- 정기용(2023),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과 관련 법률안 입법동향,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의정브리프 Vol.32 2023.4
- 주희진(2023),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의 쟁점과 개선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의정브리프 Vol. 29.
- 행정안전부(2022),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가이드라인(2022. 6.)
- 경기일보(2023), ‘[사설] 정책지원관은 도의원 비서가 아니다’, 경기일보, 2023.8.11.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30810580321>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정책지원관 사무처리규정」
<https://www.elis.go.kr/allalr/selectAlrBdtOne?alrNo=29170108000013&histNo=001&menuNm=main>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양주시의회 입법 및 정책지원 규칙」
<https://www.elis.go.kr/allalr/selectAlrBdtOne?alrNo=41630101000058&histNo=001&menuNm=main>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원주시의회 정책지원 사무처리 규정」
<https://www.elis.go.kr/allalr/selectAlrBdtOne?alrNo=42130100000053&histNo=001&menuNm=main>

〈 별 첨 〉 서대문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관련 설문지

[붙임 1] 서대문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관련 설문조사(의원 대상)

안녕하세요.

‘서대문구 자치법규 및 조직개선에 대한 입법과제 도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연구진입니다.

본 조사는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현행 조례와 규칙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더 나은 업무환경 및 조직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지원 인력을 둘 수 있으며 서대문구의회는 현재 7명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효율성 강화를 위해 신설된 정책지원관 제도가 시행된 지 2년이 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조례와 규정이 각 의회마다 상이하여 정책지원관이 의원의 의정활동을 원활히 보좌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본 설문은 정책지원관 채용, 배치, 업무분장, 만족도, 평가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의원의 의견을 듣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설문 결과는 더 나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쓰일 예정으로 부담 없이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문 내용]

1. 현재 정책지원관의 보좌 및 의정활동 지원에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 ② 그렇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지 않다.
- ⑤ 매우 그렇지 않다.

1-1. 만족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1-2. 만족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2. 현재 정책지원관의 수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2-1.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3. 평소 의정활동 지원 등의 업무에 정책지원관을 어느 정도로 활용하십니까?

① 거의 활용하지 않음

② 조금 활용함

③ 보통

④ 자주 활용하는 편임

⑤ 거의 매일 활용함

3-1. 정책지원관을 활용한다면 주로 어떤 업무에 활용하십니까?

()

3-2. 정책지원관을 활용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4. 현재 서대문구의회 정책지원관의 배치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4-1. 불만족하는 경우(④, 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복수 응답 가능)

① 별도 정책지원팀으로 배치되어 있는 것이 적절치 않음

이유()

② 담당하고 있는 의원과 정책지원관 2:1 매치 방식이 적절치 않음

이유()

③ 개별 정책지원관의 업무 분장 및 업무 강도에 차이가 있음

이유()

④기타()

4-2. '4-1'에 응답한 경우 자세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

5. 아래 표는 서대문구의회 사무분장 규칙에 따른 정책지원관의 사무분장 내용입니다.

서대문구의회 사무분장 규칙에 따른 정책지원관의 사무
1. 조례 제정·개정 및 폐지,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 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3. 행정사무감사·조사 지원
4. 의원의 구정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의원연구단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5-1. 의회 사무분장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정책지원관의 사무분장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5-2. (5-1)의 질문 중정책지원관의 사무분장 적정하지 않다(④, ⑤)고 답한 경우, 사무분장 규칙에서 빠져야하는 사무 및 추가되어야 할 사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복수응답 가능)

()

6. 서대문구의회 사무분장 규칙에 따른 정책지원관 사무 외에 다른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업무 혹은 의원과 관련된 업무들을 기준 없이 나열한 것입니다. 정책지원관의 업무로 반드시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업무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하는 업무를 구분해 주세요. (복수응답 가능)

	반드시 수행	절대 불가	모르겠음
의정활동 성과 및 실적 통계 관리			
의원의 민원 관련 자료의 수집 조사·분석 등 지원			
주민 여론조사			
민원 처리에 대한 관리			
의원 홈페이지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활용한 주민소통 지원			
의원외교·공무국외 활동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분석 및 연구 등 지원			
의원정책개발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분석 및 연구 등 지원			
의원 의정활동 보도자료 등 언론 관련 자료 작성·수집·분석 및 지원			

6-1. 정책지원관의 업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문항이 있다면 해당 문항 및 관련 업무를 누가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

6-2. ‘6, 7번 사무분장표’ 외에도 정책지원관의 업무로 더 추가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7. 향후 서대문구에 “정책지원관 운영·관리에 대한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그렇다.
- ② 그렇지 않다.
- ③ 잘 모르겠다.

7-1. 정책지원관 관련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복수응답 가능)

- ① 정책지원관 업무 관련 규정
- ② 정책지원관 채용 관련 규정
- ③ 정책지원관 배치 관련 규정

- ④ 정책지원관 평가 관련 규정
- ⑤ 정책지원관 교육훈련 관련 규정
- ⑥ 기타()

7-2. 정책지원관 관련 조례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8. 정책지원관의 근무 실적 및 업무 평가는 누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의회 사무국장 및 팀장
- ② 의장 및 담당 의원
- ③ 기타()

9. 정책지원관에게 필요한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상임위 전문성
- ② 입법 전문성
- ③ 정무적 능력
- ④ 기타

10. 향후 정책지원관 운영 관련 제도개선 방안으로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복수응답 가능)

- ① 의원 1인당 1명의 정책지원관 확보(현행 공무원 신분)
- ② 의원 1인당 1명의 보좌관 채용(국회의원 보좌관처럼 별정직으로 의원이 직접 채용)
- ③ 정책지원관 채용 요건 완화 및 채용 절차 간소화
- ④ 정책지원관 채용 요건 강화(석·박사 학위 요건 추가 등)
- ⑤ 의원이 직접 지휘·감독 등 근무평정에 의원의 평가 포함
- ⑥ 정책지원관의 업무 범위 자율화 및 직급체계 상향·자율화
- ⑦ 기타()

11. 기타 서대문구의회 사무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나 개선되어야 할 부분을 자유롭게 말씀해 주세요.

()

[붙임 2] 서대문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관련 설문조사(정책지원관 대상)

안녕하세요.

‘서대문구 자치법규 및 조직개선에 대한 입법과제 도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연구진입니다.

본 조사는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현행 조례와 규칙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더 나은 업무환경 및 조직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지원 인력을 둘 수 있으며 서대문구의회는 현재 7명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효율성 강화를 위해 신설된 정책지원관 제도가 시행된 지 2년이 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조례와 규정이 각 의회마다 상이하여 정책지원관이 원활한 업무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본 설문은 정책지원관 채용, 배치, 업무분장, 만족도, 평가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정책지원관의 솔직한 의견을 듣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설문 결과는 더 나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쓰일 예정으로 부담 없이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명으로 응답을 받지만,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심화 인터뷰가 필요한 경우 따로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개별 응답 내용은 비밀로 유지되며, 의원 및 의회 사무국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 더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는 분은 메일 혹은 전화 주셔도 좋습니다.(jiy2238@naver.com/ 010-3198-8045)

[설문지]

1. 현재 정책지원관 업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 ② 그렇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지 않다.
- ⑤ 매우 그렇지 않다.

1-1. 만족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1-2. 만족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2. 현재 정책지원관의 수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 ② 그렇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지 않다.
- ⑤ 매우 그렇지 않다.

2-1.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④, 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3. 평소 맡고 있는 업무 범위 및 강도에 대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 ② 그렇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지 않다.
- ⑤ 매우 그렇지 않다.

3-1. 현재 주된 업무는 무엇입니까?

()

3-2. 위 질문에 적당하지 않다(④, ⑤)고 답한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4. 현재 서대문구의회 정책지원관의 배치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 ② 그렇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지 않다.
- ⑤ 매우 그렇지 않다.

4-1. 불만족하는 경우(④, 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복수 응답 가능)

- ① 별도 정책지원팀으로 배치되어 있는 것이 적절치 않음
이유 ()
- ② 담당하고 있는 의원과 정책지원관 2:1 매치 방식이 적절치 않음
이유 ()
- ③ 개별 정책지원관의 업무 분장 및 업무 강도에 차이가 있음
이유 ()
- ④ 기타()

5. 서대문구의회는 의원 2명에 1명의 정책지원관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두 의원이 동시에 업무를 요청했을 때 어떻게 절차와 기준으로 업무 처리 순서를 정하십니까?

()

6. 아래 표는 서대문구의회 사무분장 규칙에 따른 정책지원관의 사무분장 내용입니다.

서대문구의회 사무분장 규칙에 따른 정책지원관의 사무
1. 조례 제정·개정 및 폐지,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 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 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3. 행정사무감사·조사 지원 4. 의원의 구정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의원연구단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6-1. 정책지원관 채용 이후 7가지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데 수행했거나 수행하고 있는 업무가 있습니까? 있다면 무엇인지 모두 나열해 주세요.

()

6-2. 의회 사무분장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정책지원관의 사무분장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 ② 그렇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지 않다.
- ⑤ 매우 그렇지 않다.

6-2-1. (6-2)의 질문 중 정책지원관의 사무분장이 적절하지 않다(④, ⑤)고 답한 경우, 사무분장 규칙에서 빠져야 하는 사무 및 추가되어야 할 사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복수응답 가능)

()

7. 서대문구의회 사무분장 규칙에 따른 정책지원관 사무 외에 다른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업무 혹은 의원과 관련된 업무들을 기준 없이 나열한 것입니다. 정책지원관의 업무로 반드시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업무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하는 업무를 구분해 주세요. (복수응답 가능)

	반드시 수행	절대 불가	모르 겠음
의정활동 성과 및 실적 통계 관리			
의원의 민원 관련 자료의 수집 조사·분석 등 지원			
주민 여론조사			
민원 처리에 대한 관리			
의원 홈페이지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활용한 주민소통 지원			
의원외교·공무국외 활동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분석 및 연구 등 지원			
의원정책개발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분석 및 연구 등 지원			
의원 의정활동 보도자료 등 언론 관련 자료 작성·수집·분석 및 지원			

7-1. 정책지원관의 업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문항이 있다면 해당 문항 및 관련 업무를 누가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

7-2. '6, 7번 사무분장표' 외에도 정책지원관의 업무로 더 추가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8. 향후 서대문구에 “정책지원관 운영·관리에 대한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그렇다.
- ② 그렇지 않다.
- ③ 잘 모르겠다.

8-1. 정책지원관 관련 조례가 필요하다고 답한 경우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복수응답 가능)

- ① 정책지원관 업무 관련 규정
- ② 정책지원관 채용 관련 규정
- ③ 정책지원관 배치 관련 규정
- ④ 정책지원관 평가 관련 규정
- ⑤ 정책지원관 교육훈련 관련 규정
- ⑥ 기타()

8-2. 정책지원관 관련 조례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9. 정책지원관의 근무 실적 및 업무 평가는 누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의회 사무국장 및 팀장
- ② 의장 및 담당 의원
- ③ 기타()

10. 정책지원관에게 필요한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상임위 전문성
- ② 입법 전문성
- ③ 정무적 능력
- ④ 기타

11. 향후 정책지원관 운영 관련 제도개선 방안으로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복수응답 가능)

- ① 의원 1인당 1명의 정책지원관 확보(현행 공무원 신분)
- ② 의원 1인당 1명의 보좌관 채용(국회의원 보좌관처럼 별정직으로 의원이 직접 채용)
- ③ 정책지원관 채용 요건 완화 및 채용 절차 간소화
- ④ 정책지원관 채용 요건 강화(석·박사 학위 요건 추가 등)
- ⑤ 의원이 직접 지휘·감독 등 근무평정에 의원의 평가 포함
- ⑥ 정책지원관의 업무 범위 자율화 및 직급체계 상향·자율화
- ⑦ 기타()

12. 기타 서대문구의회 사무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나 개선되어야 할 부분을 자유롭게 말씀해 주세요.

()



서대문구의회



ICOLA (사)지방자치발전소 아이콜라

